

제 39 차 (법 인 제 25 차)

정기 대의원총회 자료집

- 총회일 : 2024년 2월 24일(토)
- 장 소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5층)
- 시 간 : 오전 10시



바른두레생활협
www.baruncoop.co.kr

제39차(법인25차) 정기 대의원총회 자 료 집

- ▶ 총회일 : 2024년 2월 24일
- ▶ 장 소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협동조합의 정의 · 가치 · 운영원칙

✓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를 말한다.

✓ 기본적 가치

- 자조(Self-help)
-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 민주주의(democracy)
- 평등(equality)
- 공정(equity)
- 연대(solidarity)

✓ 윤리적 가치

- 정직(honesty)
- 공개(openness)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

✓ 운영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목 차

1. 연혁 -----	5
2. 제38차(법인24차) 정기총회 의사록 -----	8
3. 의안 심의	
제1호의안 2023년도 종합 감사보고 승인의 건 -----	11
제2호의안 2023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리(안) 승인의 건 -----	14
제3호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57
제4호의안 2024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	72
4. 바른두레생협 정관 -----	73

바른생활협 설립 취지문

현재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상품의 홍수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는 언제든지 가까운 시장이나 상점에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과 강이 오염되어 새가 죽고 등이 굽은 물고기가 생겨났습니다.

땅이 죽어 농산물이 오염되고 마음 놓고 마실 물, 숨 쉴 공기조차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의 편리와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편리와 풍요만을 위해 우리들은 돈과 물질을 가장 우선시 하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우리 생존의 터전인 자연이 파괴되어도 상관없었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불신과 경쟁도 서슴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활양태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공생, 이웃 간의 신뢰회복, 협동적인 생활공동체 형성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진실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 만드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바른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환경에 이로우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와 생활물자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을 협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생활물자에 바로 협동과 공생의 의미를 담아낼 것입니다. 또한 생활물자의 개발과 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바른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들이 모인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이에 바른생활협동조합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2000년 2월 28일 / 바른생활협동조합 법인설립발기인회

바 른 두 레 생 협 이 걸 어 온 길

	5월 13일	발기인회 개최
1985년	5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임원진 구성(56명 참석)
	12월 18일	소협 중앙회 회원조합(제5-3호)으로 가입
1986년	5월 29일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월 11일	국민일보 보도 "무점포 소협으로 성공"
1987년	3월 3일	소협중앙회 2차 정기총회에서 우수조합으로 수상
	3월 23일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생협 전국연합회) 가입
1988년	5월 29일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9년	5월 29일	제5차 정기총회 개최
	3월 16일	제1차 노동 만남의 잔치 개최(속달리 납작골, 80명 참가)
	4월 10일	바른생협 회보 창간호 발행(더불어사는 생활공동체)
1990년	6월 1일	중앙회 사업부 당 조합 사무실로 이전 업무개시
	8월3~5일	일본 생활클럽생협 지바조합 한국연수단 조합원 집에서 민박
	8월 17일	사무실 이전 안양3동 695-52(지하 50평)
	12월 31일	사업자 등록(123-82-04867)
1991년	1월28~2월3일	일본 생활클럽 생협 연수 조합원 11명 참가
	10월5~6일	천주교구수원교구 여성연합회 주최 "사랑의 바자회"참가
	1월 1일	폐품 재활용 운동 전개(우유팩 모으기, 폐식용유 모으기, 건전지 수거)
1992년	1월 19일	산친구들(산악회) 수리산으로 첫나들이
	2월 14일	제1회 살림강좌 개최 "여성시대" 김영주
	6월 12일	안양5동 627-176 사무실 개소식
	2월 2일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 가입
1993년	3월 7일	우리밀밭 밝기 조합원 가족나들이 개최
	6월	안양생활소비자협동조합 명칭 바른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
1994년	4월 16일	안양지역 지구의 날 행사 참여
1995년	2월 22일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1996년	4월 9일	산본지소 개소
	1월 20일	생활재위원회 시작
	4월	지역모임 시작
	5월 30일	산본지소 폐쇄
1997년	8월 24일	상주 「땅을 지키는 모임」 견학 후 수재의연금 전달
	11월	어린이 겨울캠프 개최(장소:원주생협)
	6월 13일	단오절 행사 경기도 남양에서 개최(바른, 안양Y생협)
	11월 29일	공동구입 부분 수도권연합회 사무실로 이전(시흥시 목감동)
	12월 5일	신규 점포 오픈(안양5동 627-102, 30평)
2000년	2월 28일	바른생활협동조합 법인 창립 총회
	7월 23일	신규조합원 이용설명회
2001년	8월1~4일	생활재위원 일본 그린코프생협 연수
	12월 5일	홈페이지 개설(baruncoop.or.kr)
	1년24~25일	어린이 겨울캠프 진행
	4월 11일	매장위원회 시작(안양)
2002년	6월 6일	바른생협인 한마당 개최
	10월 2일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벼 재배 규탄 시민대회 참가
	10월 13일	우리쌀지킴이 만민공동회 참가
2003년	1월 15일	아토피소모임 시작

	2월 26일	18차 정기총회 개최
	3월 17일	청계산 생태공부 모임 시작
	5월 31일	영통매장 개점
	10월 16일	생협전국연합회 2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 수상
	2월 24일	제19차(법인 5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2004년	8월20~22일	어린이 여름캠프
	12월 10일	안양매장 5주년 기념행사
	5월 22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005년	5월 17일	영통매장 이전 및 행사
	9월 23일	안양 어린이생태교육모임 진행
	12월 16일	안양매장 이전 및 행사
	5월 10일	홍성 장곡면 대현리 마을과 자매결연식 체결
2006년	6월 28일	평촌매장 개점
	7월22일~24일	홍성 정다운 농장에서 어린이 여름캠프 진행
	1월 3일~5일	홍성 생산자 자녀 초대 겨울캠프
2007년	7월 11일	천천매장 개점
	10월 1일~22일	활동가 양성교육 4회 진행
	1월~2월	서해안 기름제거 활동전개(총 5회)
2008년	5월 31일	전·현직 임직원 만남의 날 개최
	8월 25일	동탄매장 개점
	5월 13일	인덕원매장 개점
2009년	11월 4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 자매결연 및 조인식
	12월 9일	제주생산지에 도서 및 의류보내기 활동 전개
	12월 10일~11일	상주 여성생산자와의 교류회
	2월 18일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 시작
	5월 5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2010년	7월 3~4일	성주 참외생산지 일손돕기
	9월 8일	매탄매장 개점
	11월 24일	평촌매장 확장 이전식
	3월 21일	일본지진피해 돕기 모금활동 전개
2011년	5월 20일	생산지 일손돕기 활동시작(총 5회 진행)
	11월 19일	김장나눔행사
	11월 23~27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3차 교류회
	2월 22일	바른생협에서 바른두레생협으로 명칭 변경
2012년	3월 21일	반찬나눔 활동시작
	6월 28일	산본매장 개점
	11월 3일	안양지역 협동조합 한마당
	5월 30일	안양지역 협동조합 한마당
	6월 4일	동탄점 이전 행사
	7월 1~2일	천천점 이전행사
2013년	7월 21~24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의 어린이 캠프 충남 홍성에서 진행
	7월 25~28일	후쿠시마 리프레쉬 투어
	10월 17일	경기지역 협동조합연합회 창립
	11월 6~10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정기교류 및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가
2014년	7월 23~26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의 어린이 캠프 일본 가나가와에서 진행
	8월 18일	호매실매장 개점
	11월 28~30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가
2015년	5월 21일	창립30주년 기념식

	7월 4일	창립30주년 심포지움(컨텍스)
	8월 25일	영통매장 정육코너 입점(홍성유기농)
2016년	8월 28일	습&습 따복공동체 입점(영통점, 평촌점, 동탄점, 인덕원점, 호매실점)
	12월 31일	호매실점 폐쇄(습&습 따복공동체 폐쇄)
2017년	6월 30일	습&습 따복공동체 입점 (안양점)
	6월 30일	산본점 폐쇄
	11월	협성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
2018년	3월 21일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협약
	5월 16~17일	창립33주년 기념행사
	5월 30일	습&습 따복공동체 입점 (천천점)
	8월	매탄점 공유냉장고 운영
	10월 15일	수원시 생명산업과 업무협약
	12월 24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2019년	03월 01일	습&습 따복공동체 입점 (매탄점)
	05월 25일	안양점, 영통점 외 5개 매장 법인지점등기 완료!(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매장)
	06월 04일	동탄점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완료!
	07월 22일	동탄 매장 '생협플러스' 운영 업무 협약
	10월 17~19일	일본가나가와생활클럽 교류
2020년	5월 21일~22일	35주년 기념 비타민 나눔기부 행사
	6월 10일	본부 사무실 이전
	6월~12월	사회적 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사업 1단계 확정
	7월	농식품진흥원 먹거리 보장사업 정부지원 확정
	8월 12일	참살이 협동조합 공정무역 제품구입 소비촉진 업무협약
	9월~12월	사회적 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사업 2단계 확정
	9월 1일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11월 13일	화성시 공정무역 협의회 공정무역 기관협약체결
2021년	2월	수원햇빛발전 출자 및 펀드가입
	06월 11일	안양노인복지관 업무 협약
	10월 21일	청솔로터리클럽 업무 협약
	11월 16일	바른소식지 웹자보 발간
	12월1일~3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가
2022년	3월 3일	명학점 오픈행사
	5월 25일	안양점 본점 이전
	11월 22일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지원 공로상 수상
2023년	6월 22일	두레생산자회 이사회 합동 개최
	9월 16일	신협 '협동이데이' 플리마켓 참가
	11월 18일	일본 생향클럽 교류 협약 및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관

제 38차 (법인 24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38차 정기대의원총회
2. 소집연월일 : 2022년
3. 일 시 : 2023년 2월 18일 (토) 오전 10시
4. 개 최 장 소 :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청 본관 3층 강당
5. 재적 대의원 : 100명
6. 참석 대의원 : 52명
7. 의 장 : 바른두레생협 이사장 이정우
8. 총 회 순 서
 - 제 1 부 : 기념식
 - 제 2 부 : 본회의
9. 1부 기념식
 - 가. 개식선언 : 10시에 윤형미 이사가 개식 선언을 하다
 - 나. 연혁보고 : 윤형미 이사가 연혁 보고를 하다.
 - 다. 내빈소개 : 윤형미 이사가 새안양신협 홍흥식 이사장, 안양YMCA등대생협 박윤희 이사장 및 바른두레생협 이사들을 소개하다
 - 라. 기 념 사 : 이정우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다
 - 마. 축 사 : 새안양신협 홍흥식 이사장 및 안양YMCA등대생협 박윤희 이사장이 축사를 하다
 - 바. 공로패 전달
감사 윤형환 / 전 상무 이경미
 - 사. 우수 조합원 및 직원 시상
 - 1) 우수생산자 시상 : 농업회사법인 산안마을 대표 김상보
 - 2) 우수조합원 시상
안양점 김금순/ 영통점 고경현/ 평촌점 이경숙/천천점 송인자/ 동탄점 강효향
인덕원점 이영주/ 매탄점 청아한지역아동센터/ 명학점 이정선
 - 3) 우수직원(장기근속)시상 : 본부 임정희/ 본부 엄선영 / 안양점 김미심
 - 아. 임원 퇴임식 : 신연홍 부이사장, 김정순 이사, 김금난 이사, 남양선 이사
 - 자. 폐식선언 : 사회자가 1부 기념식 폐회를 선언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다.
10. 2부 본회의
 - 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한대건 상무가 100명중 52명의 대의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정우 의장이 총회 개회선언을 하다.
 - 나. 의사록 서명 날인인 및 서기 선임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해 신연홍 대의원, 남양선 대의원 강연옥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추천하고 양연실 대리를 서기로 선임하다. 원안대로 통과되다.

다.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신동석 대의원이 제37차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의장이 대의원에게 질의여부를 묻고 질의가 없음으로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다
- 전차 회의록을 승인하다.

라. 의사일정 확정

- 이정우 이사장이 1호의안, 2호의안 심의 후에 6호의안인 임원선출을 먼저 진행한 후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차입금한도액의 승인을 진행하고자 동의를 구하다. 대의원들이 동의하여 승인하다.

마. 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2022년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윤영환 감사가 2022년 사업경영감사보고를 하다.
- 임상옥 감사가 2022년 종합회계감사보고를 하다.
- 이정우 의장이 감사보고에 관하여 대의원에게 질의여부를 묻다.
- 이정우 의장이 감사보고의 승인여부를 묻다.
- 대의원 52명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안)승인

- 한대건 상무가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보고하다.
- 이정우 의장이 제 2호 의안에 관하여 대의원에게 질의 여부를 묻다.
- 대의원의 질의가 없고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다.
- 대의원 52명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3) 제6호의안 임원선출의 건

- 신연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시 의장으로서 제38차 대의원총회 임원선거를 시작하다.
- 김금난 전형위원회 위원장이 김란희, 박선희, 신동석, 윤형미, 이상영, 이정우, 주선미, 한대건 8명의 이사후보 및 임상옥, 전준범 감사후보 모두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요건등을 만장일치로 확인함을 보고하다.
- 신연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선정에 관한 대의원의 질의 여부 및 일괄승인 선거방식을 묻고 대의원 질의 없음과 일괄선거방식에 대해 대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바른두레생협 이사 및 감사 선출이 대의원들이 박수로 통과되다.
- 신연홍 위원장이 이사 및 감사 후보들에게 승낙여부를 묻고 후보들의 승낙을 확인한 후 김란희, 박선희, 신동석, 윤형미, 이상영, 이정우, 주선미, 한대건이 이사로, 임상옥, 전준범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사들의 회의로 추천된 이정우 이사가 이사장 후보로 선출되다
- 신연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의원에게 추가 추천을 묻다.
- 대의원의 추가 추천이 없고 대의원의 반대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박수로 승인통과되다.
- 신연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의원 승인과 본인의 승낙으로 이정우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됨을 선포하다
- 신연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 3호의안 임원선출의 건을 종료하다.

(4) 제3호 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및 제 4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의 건

- 신임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정우 이사장이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안) 및 제

4호의안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제안하다.

- 한대건 상무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차입금 최고한도의 건을 보고하다
- 이정우 이사장이 대의원들의 질의 및 승인여부를 묻다.
- 원안으로 통과되다.

(5) 제5호 의안 안양본점 등기이전의 건

- 이정우 이사장이 제5호 의안 안양본점 등기이전의 건을 안건으로 제안하다.
- 한대건 상무가 안양본점 이전으로 인한 등기이전의 건을 보고하다.
- 이정우 이사장이 대의원들의 승인여부를 묻다.
- 아래와 같이 원안으로 통과되다.

변경 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1,2층 (안양동)
변경 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108호, 109호

(6) 제7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 한대건 상무가 협동조합법의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안 및 규약변경에 관하여 보고하다.
- 이정우 이사장이 대의원들의 승인여부를 묻다.
- 별지와 같이 원안으로 통과되다.

(7) 기타 안건

- 이정우 이사장이 대의원에게 기타 안건 제안여부를 묻다.
- 대의원의 질의가 없고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다.
- 원안으로 통과되다.

바. 폐회 선언

- 의장이 보고내용에 따른 모든 의결사항을 다루었음을 확인한 후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8차(법인24차) 대의원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02.18.

의사록 서명날인

의장 및 이사장 이정우

의사록 확인자 신연홍

남양선

강연

제1호 의안

2023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 제5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감사보고서

일 시: 2024년 2월 2일 오전 11시

장 소: 바른두레생협 사무국 회의실

참석자: 전준범, 임상옥, 이정우, 한대건, 양연실

바른두레생협 정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업/조직/운영 부분 감사의견]

1.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생협은 2023년 한 해 동안 한 차례의 대의원총회 및 일곱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대의원 총회 및 각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 2023년은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적인 전략으로 인하여 우리 생협을 포함 여러 생협들이 어려움을 겪은 시기입니다. 우리 생협의 2023년도 순이익은 -5,967,346원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적자 상태에 있으나, 2022년도 순이익 -155,616,228원과 비교할 때 적자 폭은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일정하게 방어를 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자매장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고 무점포 조합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3. 조직홍보 부문 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 동시에 비조합원에게 소개하고 싶을 만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한 사업기획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생산지 견학, 간편식 봉사활동, 각종 기념사업, 연대활동 등 모든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위와 같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무국 역량을 집중하고, 반대로 위와 같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과감히 축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

[재정 및 회계 부문에 대한 감사의견]

1. 바른두레생협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 계산서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2. 바른두레생협의 재무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

감사 전준범



감사 임상옥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리(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23년 사업부 평가

■ 2023년도 핵심과제

위기를 기회로! 미래가 있는 두레

■ 2023년도 핵심정책

- I. 정체성(가치소비)강화
- II. 매장지원사업 고도화
- III. 바른두레 경영 내실화

1. 매출목표

- 총매출 목표 : 8,200,000,000원
- 매장매출 목표 : 7,350,000,000원-> 전년대비 5% 인상분 반영
- 무점포매출 목표 : 850,000,000원-> 전년대비 5% 인상분 반영
- 마진율 목표 : 25% 달성!

2. 핵심정책

1) 정체성(가치소비)강화

- 바른두레만의 STORY(역사, 존재이유, 신뢰 등) 개발
- 생활재 취급기준의 재정립 및 홍보 (가장 까다로운 취급기준에 대하여)
- 취급기준에 대한 직원 교육
- 바른두레생협 이미지 재고 및 홍보 (젊고 변화하는)
- 'ONE STOP SHOPPING'이 가능한 매장이용 활성화 방안 개발
- 단위생협간 정책 및 가치의 공유와 연대
- '가치소비' 브랜드화 전략 수립
- 연령대별 조합원 세분화 및 NEEDS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조합원 확대)
- '생활재 전문가' 그룹 양성 (스터디 그룹 기획)

2) 매장지원사업 고도화

- 안정적인 생활재 구매 및 신규 생활재 개발
- 생활재에 대한 정보 파악 등 업무 능력 강화 (생활재 전문가 정보 활용)
- 매장(점장) 업무 개선 방안 모색 (자동발주 등)
-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 확립 (연합회교육 및 단협교육 병행)
- 매장사업부 단위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
- 공공급식(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거래처 확대
- 매장 행사 확대 및 행사 매뉴얼 개발
- 매장간 협업시스템 구축

3) 바른두레 경영 내실화

- 분야별 표준 및 기준 수립
- 재무안정성(영업이익, 현금유동성) 관리
- 비용 절감 (소모성 비용 최소화)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근로자에 대한 복지 확대 및 인력안정성 확보
- 회원생협간 / 지자체와의 연대사업 강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수익사업 개발
-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연합회의 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
- 적극적 활동 조합원 확보 및 조직활동 확대
- 연대를 통한 안정적인 복지활동 확대

1. 매출 목표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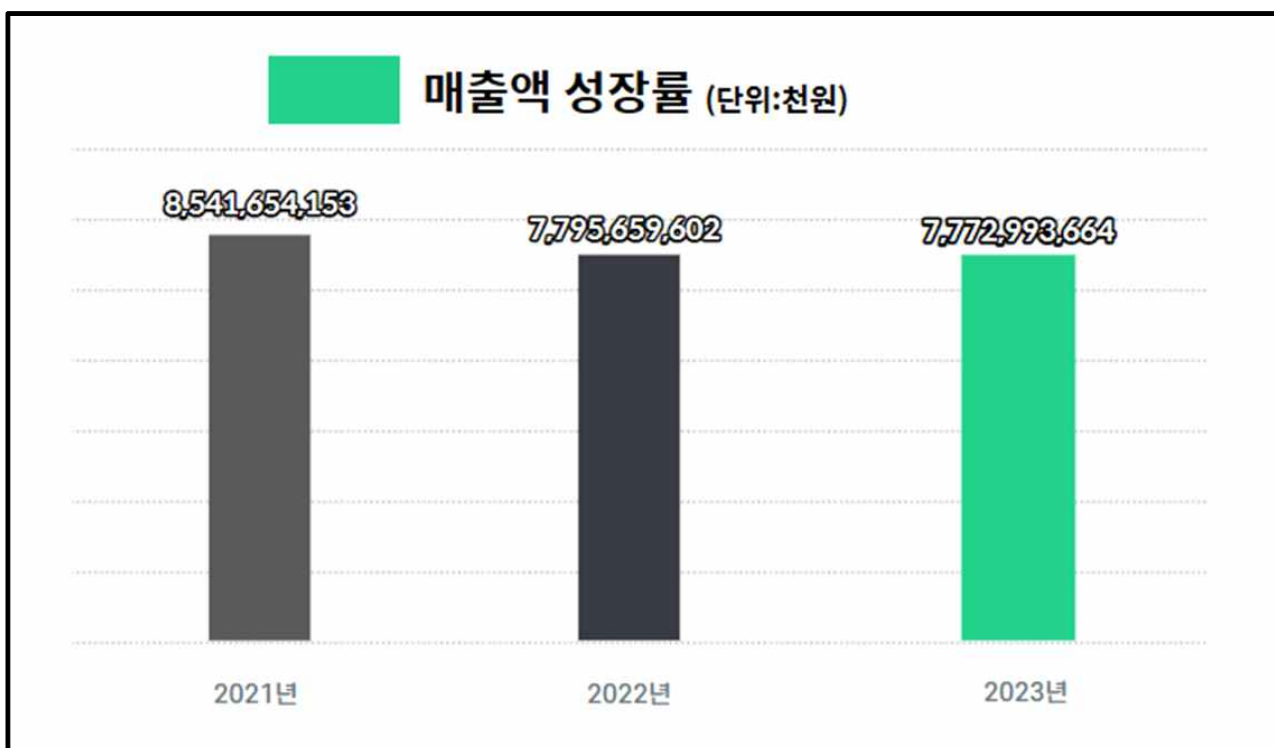
1) 목표

- 2023년 매출 목표 : 年 82억
- 2023년 매출 결과 : 77억7천만원(전년대비 99.70% 달성)
- 2023년 당기순이익 : -5,967,346원

2) 결과

- 총매출 결과

	2021년 매출	2022년 매출	2023년 매출	전년도대비 성장율
매출	8,541,654,153	7,795,659,602	7,772,993,664	9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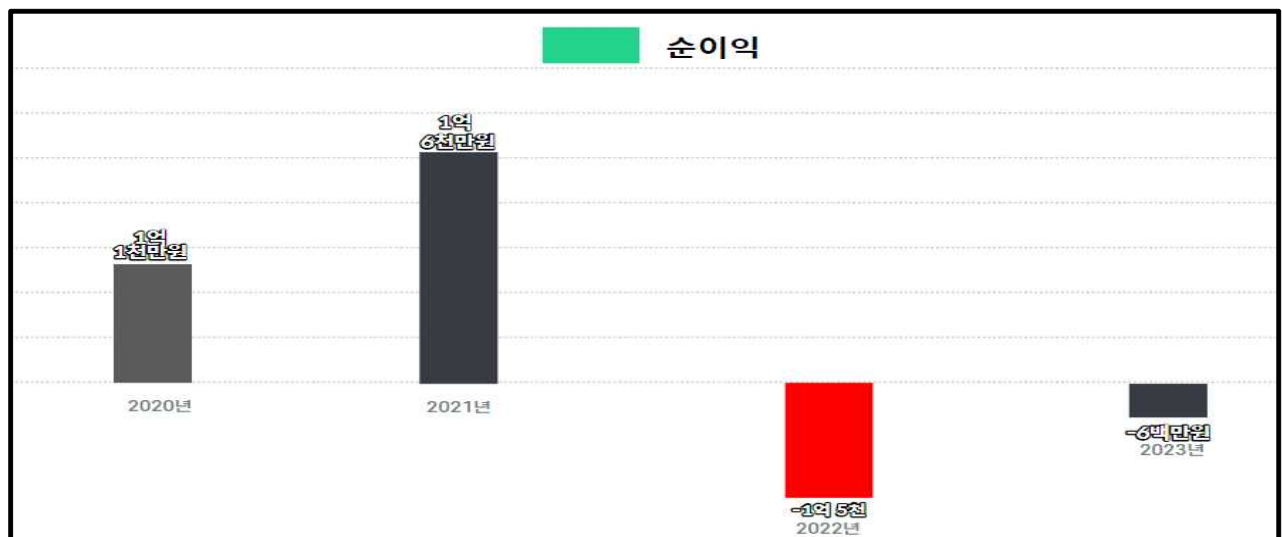


- 매장별 매출결과

매장	2022년 매출액	2023년 목표액	2023년 매출액	전년 대비(%)
안양	832,683,236	850,000,000	784,379,721	94.19%
영통	1,264,028,414	1,300,000,000	1,207,924,548	95.56%
평촌	1,113,522,438	1,150,000,000	1,136,311,901	102.04%
천천	1,022,171,254	1,050,000,000	1,048,684,057	102.59%
동탄	786,529,286	800,000,000	666,810,188	84.77%
인덕원	882,640,076	910,000,000	911,749,102	103.29%
매탄	679,567,801	720,000,000	671,972,530	98.88%
명학	404,324,426	570,000,000	504,551,878	124.78%
무점포	810,192,671	850,000,000	840,609,739	103.75%
합계	7,795,659,602	8,200,000,000	7,772,993,664	99.70%

3) 2020~2023년 매출대비 순이익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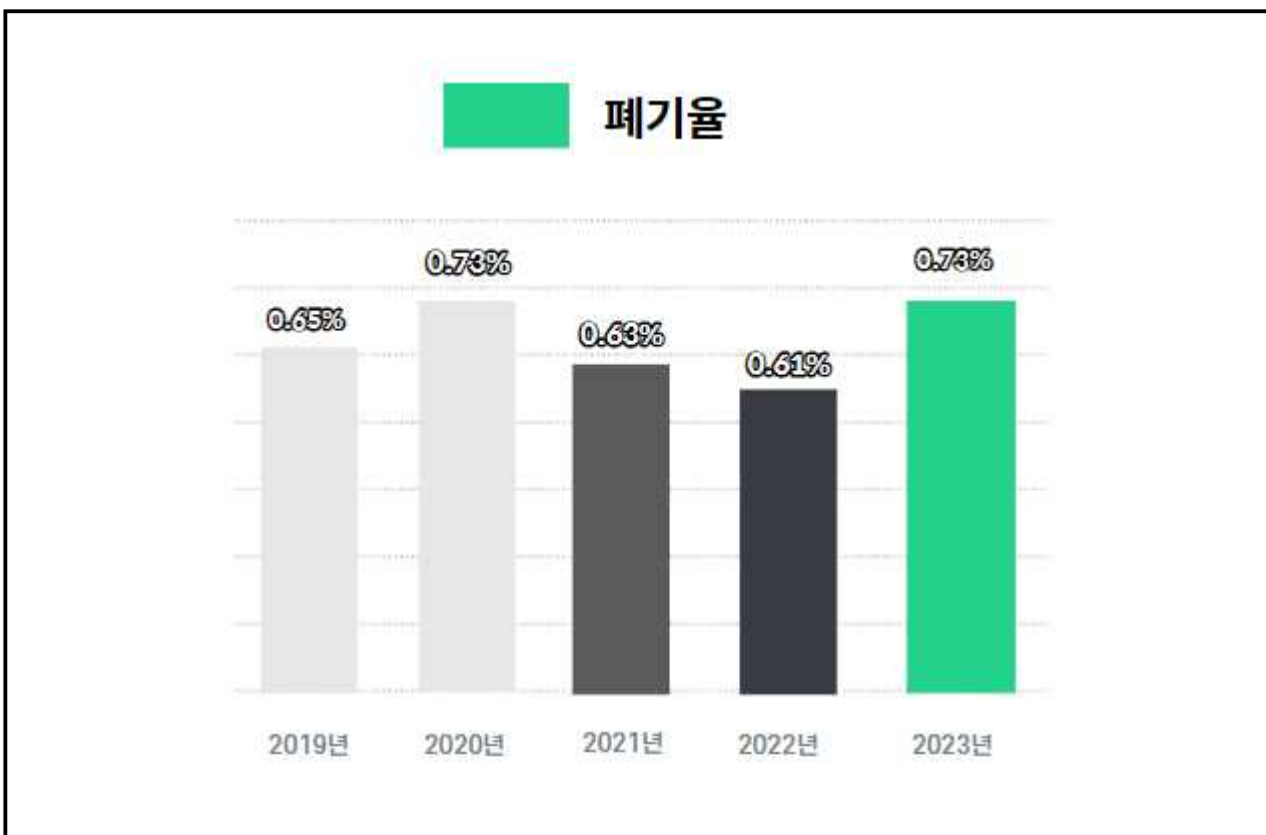
	매출액	순이익	성장률
2020년	8,579,865,534	114,282,163	147%
2021년	8,541,654,153	165,679,521	144%
2022년	7,795,659,602	-155,616,228	적자전환
2023년	7,772,993,664	-5,967,346	99.7%



4) 2023년 매장 폐기율 및 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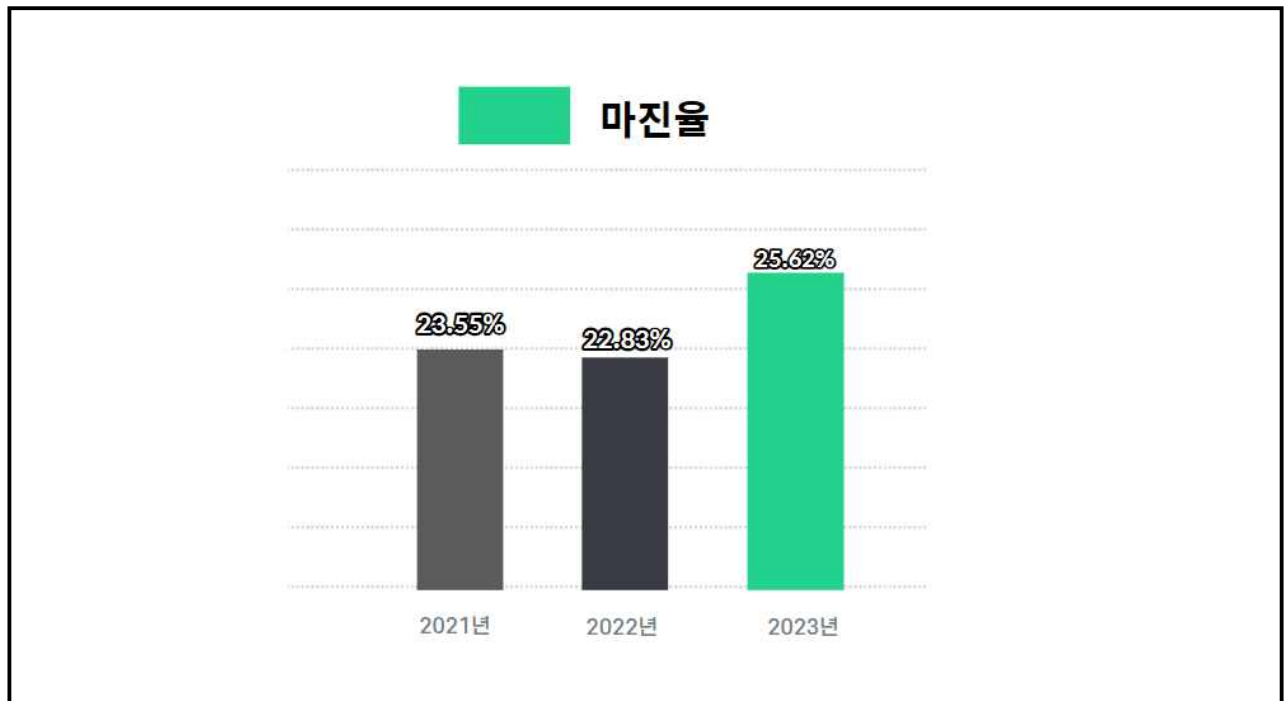
- 매장 폐기 현황(2019년~2023년)

년도	매출액	폐기 금액	폐기율
2019년	7,748,767,750	50,674,016	0.65%
2020년	8,579,865,534	63,247,171	0.73%
2021년	8,541,654,153	54,109,243	0.63%
2022년	7,795,659,602	47,778,711	0.61%
2023년	7,772,993,664	57,036,751	0.73%



-매장 마진율 현황(2020년~2023년)

년도	매출액	매출원가	마진율
2020년	8,579,865,534	5,960,077,347	23.41%
2021년	8,541,654,153	6,529,930,242	23.55%
2022년	7,795,659,602	6,015,255,280	22.83%
2023년	7,772,993,664	5,781,430,295	25.62%



5) 2023년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매출현황

- 매출 현황(2019년~2023년)

년도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개수	매출 금액	매출비율
2019년	53개소	252,752,686	2.49%
2020년	47개소	382,795,990	4.46%
2021년	77개소	464,563,946	5.43%
2022년	80개소	511,189,735	6.55%
2023년	80개소	598,300,490	7.69%

6) 전년도대비 매장 방문객수 및 객단가

구분	2022년		2023년	
	객수	객단가	객수	객단가
안양점	23,537	35,210	22,198	35,467
영통점	37,144	33,127	32,859	36,203
평촌점	33,673	33,287	32,695	34,830
천천점	35,034	29,454	33,793	31,133
동탄점	24,166	32,575	21,295	32,024
인덕원점	30,808	29,034	29,192	30,809
매탄점	31,872	21,272	20,959	32,809
명학	15,945	24,614	19,559	25,924
합계	29,022	29,821	26,568	32,399

7) 사회적기업 매출

년도	사회적기업 입점 수	매출 금액
2021년	53개	420,496,699
2022년	57개	437,481,481
2023년	68개	455,107,636

2. 전년도대비 조합원 가입, 탈퇴 및 이용조합원

- 2023년도 조합원 수 : 17,950명

- 이용조합원 81.03%달성! 작년대비 0.7% 상승!

구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가입	가입	탈퇴	탈퇴	순증가	순증가	전체 조합원	전체 조합원	이용 조합원	이용 조합원
무점포	146	208	222	118	-76	80	3,834	3,944	1,631	1,759
안양점	226	87	63	90	163	-3	1,612	1,640	1,373	1,398
영통점	88	71	96	97	-8	-26	2,671	2,658	2,293	2,284
평촌점	111	91	92	73	19	18	2,224	2,225	2,224	2,225
천천점	112	103	89	87	23	16	1,841	1,867	1,841	1,867
동탄점	72	62	86	87	-14	-25	2,092	2,067	1,634	1,639
인덕원	57	40	62	63	-5	-23	1,418	1,406	1,412	1,400
매탄점	67	63	53	75	14	-12	1,440	1,436	1,267	1,267
명학점	539	67	20	26		41	659	707	659	707
합계	1,418	792	783	716	116	66	17,791	17,950	14,334	14,546

3. 개별나눔(무점포)

- 조합원 수 : 1,631명 - 매출결과 : 840,609,739원

항목	22년 결과	23년 결과	전년대비(%)
매출	810,192,671	840,609,739	103.76%
이용조합원수	1,631	1,759	107.84%
1인당 이용금액	576,857	553,607	95.96%
총 주문 수	12,669	13,218	104.33%
1인당 연간 주문 횟수	7.7회	7.5회	97.40%

4. 매장별 배송매출 (단위 : 천원)

	배송 건수			배송 매출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안양	2,176	2,231	102.53%	204,217	195,230	95.60%
영통	2,231	2,165	97.04%	201,127	186,883	92.92%
평촌	2,151	2,764	128.50%	209,854	261,483	124.60%
천천	1,343	1,550	115.41%	127,058	130,410	102.64%
동탄	2,015	1,773	87.99%	235,801	179,660	76.19%
인덕원	1,431	1,752	122.43%	125,923	152,668	121.24%
매탄	1,506	1,574	104.52%	125,695	121,544	96.70%
명학	710	765	107.75%	52,589	62,462	118.77%
합계	13,563	14,574	108.27%	1,229,675	1,290,340	104.93%

5. 2023년 월간 기획 및 생활재 기획

월별	2023년 월별 매장 행사 및 집중 생활재
1월	설명절행사 / 차례상, 제수용품, 설선물세트, 겨울방학 간편식, 건강식품
2월	정월대보름행사 / 정월대보름음식, 울릉도고로쇠, 메주
3월	봄맞이감사행사 (명학점주년행사) / 환절기대비 건강식품, 봄나물
4월	신규조합원확대행사 / 햇산양삼
5월	바른생협38주년창립행사 / 가정의달 건강식품
6월	연합회권역행사 (영통,평촌,천천,인덕원점 주년행사) / 매실, 하지감자, 인견이불
7월	초복,중복행사 / 전복, 제주촌닭, 민물장어, 햇마늘, 인견바지
8월	말복행사 (안양,동탄,매탄 주년행사) / 전복, 제주촌닭, 민물장어, 햇고춧가루
9월	추석명절행사 / 굴비, 인견패드, 고밀도차렵이불
10월	가을맞이감사행사 / 생명나눔한마당생활재(헵쌀), 태추단감
11월	김장행사 / 완성김치, 절임배추, 안심전기요
12월	연합회권역행사,책임조합원행사 / 흑염소엑기스, 크리스마스케이크

■ 2023년 BEST 생활재

조합원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연합생활재는?		조합원이 가장 많이 이용한 독자생활재는?	
순위	생활재명	순위	생활재명
1위	우리콩부침용두부(대/국산)	1위	단)강원도강냉이(150g)
2위	깻잎(20장/무농약)	2위	단)백미떡국떡
3위	달구네유정란(15알/동물복지)	3위	단)좋은불고기
4위	두레유기농우유(200ml)	4위	단)좋은양지
5위	당근(500g/무농약)	5위	단)호박찰시루떡
6위	우리콩연두부(100g/국산)	6위	단)거피숙인절미
7위	유기요기 유기농감귤주스	7위	단)현미가래떡
8위	우리콩찌개용두부(국산)	8위	단)좋은국거리
9위	대파(300g/무농약)	9위	단)청국장찌개
10위	양파(1kg/무농약)	10위	단)이호상토마토

■ 총평가

2023년 조합원 이용고는 77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3% 소폭 하락한 결과로 마감되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시대의 조합원 가계부담 감소를 위해 각종 쿠폰 (수산, 농축산, 경기)을 적극적으로 기획,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매출 확대 및 마진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자생산지(사회적기업포함)의)초청, 방문행사 등으로 매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합원 방문을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축된 조합원님들의 소비심리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역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4高로 인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바른두레생협도 신규조합원 확대 및 매출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연합회 쿠폰할인 프로모션 및 기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장업무환경개선(POP,가격표,문자), 지속적인 독자생활재 발굴, 사회적기업과의 연대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저성장, 소비절벽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바른두레생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조직홍보부문

1. 위원회 활동

■ 생활재 위원회

1) 신규 생활재 검토 및 시식

- 일 시 : 매월 첫째주 수요일 10:00 ~ 13:00
- 내 용 : 생활재가 공급되기 전, 두레생협 조합원을 대표하여 안전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재들을 검토하고 개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매월 매탄점에서 (총 10회) 진행.

차수	일시	참석	회의결과
1차	2/09(목)	11조합 - 대면회의 11조합	○ 총 6개 유형 16품목 제안 ○ 선정회의 결과 - 공통생활재(16품목) : 한봉참치, 냉장나물류 6종, 생협함께 ABC주스, 쌀스틱 5종, 유기농 바질가루, 볶은 캐슈넛, 촌스러운 세탁비누 - 한봉참치의 경우 캔이 아닌 파우치 공급으로 캔에 대한 비스페놀a(환경호르몬) 문제를 해결하고 참치의 원물이 MSC인증된 원물 사용으로 안전성 및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가격대가 시중대비 비싼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올리브유를 사용하여 NON-GMO 안전성까지 확보한 생활재로 개발되었음을 보고 공통생활재로 취급결정 됨(울림두레 미취급 결정) - 고체바와 삼류, 액상과 고체의 이용 차이가 궁금하다는 의견, 생산자회에서 조합원 인식 설문조사 진행을 요청함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정월대보름 냉장나물류 기획 공급. 기존 자연예찬 생산지 냉동 나물 수요 감소와 냉장나물 공급 제안했으나 내부 인력배치 어려움으로 강화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신규 생산지인 손맛식품을 통해 대체 공급. 시즌 기획으로 선정위 보고 후 공급이 어려워 선공급후 당일보고 형태로 진행. 단, 기획공급 후 보고를 진행할시에 품질관리팀 산지 점검결과자료의 점수에 대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생협함께 ABC주스 조합원가 인상관련하여 기존 사과 원물이 일반 국내산에서 한살림 참여인정 사과로 인한 인상부분을 안내. 출시 전 생협함께 개발과정에 대한 진척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차후 1차 가공 소진시 원물을 한살림 산지가 아닌 두레의 원물이 사용 가능토록 요청 - 쌀스틱 5종의 간식류는 22년도 임산부 전용으로 공급한 생활재이나 임산부사업종료로 인해 남은 재고분에 한해서 소진시까지 조합원 판매를 제안
2차	3/09(목)	13조합 - 대면회의	○ 총 6개 유형 11품목 제안 ○ 선정회의 결과 - 공통생활재(10품목) : ABC콜라겐젤리스팅, 담백한 닭가슴살허브, 우리쌀로만든

		13조합	채식자장라면, 반찬나물류 3종(시금치, 콩나물, 느타리버섯), 반찬 김치류 2종(순무김치, 순무나박김치), 유기농우유(멸균), 고추씨기름 - 선택생활재(1품목) : 알로에젤리스틱 -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안한 ABC콜라겐젤리스틱은 연생위에 참석한 2곳 생협(참좋은, 팔당생명)과 회의에 불참하였지만 검토의견서를 통해 미취급 결정된 1곳 생협(주민두레)으로 연생위 취급결정 기준(참석인원수 대비 미취급 80%미만 공통, 이상 선택)에 따라 공통생활재로 취급 결정됨. 미취급 사유로 수입 원재료가 너무 많이 사용된 부분과 젤리처럼 만들기 위한 제조과정중 첨가물이 다수 사용된 부분 - 알로에젤리스틱은 연생위에 참석한 3곳 생협(참좋은, 팔당생명, 경기남부)과 회의에 불참하였지만 검토의견서를 통해 미취급 결정된 1곳 생협(주민두레)으로 연생위 취급기준에 따라 선택생활재로 취급 결정됨. 미취급 사유는 ABC콜라겐젤리와 동일 - 반찬나물류 3종은 연생위에 참석한 1곳 생협만(참좋은) 미취급으로 결정되어 연생위 취급기준에 따라 공통생활재로 결정됨. 미취급 사유로는 1차농산물 원재료가 친환경 사양이 아닌 부분 - 유기농우유(멸균)은 연생위에 참석 모두 취급으로 결정되어 연생위 취급기준에 따라 공통생활재로 결정됨. - 채식자장라면은 육류와 달걀을 제외하고 비건 조합원님들도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분말형태 스프를 액상스프로 변경하면서 자장라면 다운 맛을 내기위해 부득이 일부 첨가물이 사용되었음을 보고, 이용시 매운맛을 좋아하는 조합원들께 신규 제안한 고추씨기름과 함께 이용하면 매우 좋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연계 프로모션을 기획 하기로 함. 단, 스프에 사용된 채종유(카놀라유)의 non-gmo 확인 후 공통생활재로 취급결정 하기로 함(제조처 서류 요청 하였으나 서류 미확인 되어 취급 보류)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기존 공급중인 숙절미라떼에 사용된 쉐 원물을 거문도의 해풍썬 생산지로 변경하여 향과 품질을 개선된 사양으로 제안드리고 공급 진행하기로 함.
3차	4/13(목)	12조합 - 대면회의 12조합	○ 총 5개 유형 15품목 제안 ○ 선정회의 결과 - 반찬, 마실거리 2종 미역줄기 볶음(공통생활재 / 참좋은 미취급) 신선반찬은 육안으로 보고 구매해야하는 특징으로 파우치포장보다는 트레이용기 포장형태로 공급함을 안내 유기농토마토즙(공통생활재) 토마토 농축액에 사용된 원재료가 동일 원재료임을 안내 - 양념, 조미 4종 순우리밀 된장(공통생활재) 사양서의 정제수 함량비 표기상의 오류에 대해 안내하고 수정된 사양서로 배포함. 밀가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밀쌀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생활재의 특징 안내시에 수정하기로 함. 고추씨가 소량 포함되어 있어 약간 매운맛이 난다는 문구 추가 하기로 함.

			알 옥수 3종(해물, 사과, 한우 / 공통생활재) 알 옥수 3종중 한우,해물은 물의 함량이 500ml이고 사과만 400ml이나 잘못 표기된 안내관련 수정하기로 함. 타 유통사에 공급되는 형태에 대해 문의가 있어 담당자가 보고하고 PB전환시 첨가물 배제 가능하나 각 품목별 MOQ(제작수량)가 6,000개씩 생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공급이후 가능한 생활재에 한해서 PB로 진행을 검토하기로 함 - 간식거리 3종 유기농 칩 2종(현미 칩, 오곡 칩 / 공통생활재) 생산 후 3~4개월 경과 후 찌내 비슷한 쌀 원료 특유의 향 클레임을 줄이고자 코코넛분말이 사용됨을 보고. 제조처 생산라인 문제로 넓이는 조정이 어렵지만 길이는 조절이 가능함을 답변 통밀베이글(공통생활재) 식물성 오일 사용이 가능하나 발효시 어려운 문제로 버터가 사용됨을 보고 - 식사대용, 간편식 6종 해조국수 2종(미역국수, 다시마국수 / 공통생활재) 겨울철 온국수로 이용해도 좋다는 의견과 산도조절과 증점제 때문에 일부 소량의 첨가물이 사용됨을 보고 탕류 4종(추어탕,시래기된장국,보리새우아욱국,성게미역국 / 공통생활재 / 안양Y미취급) 3차 원재료 배합비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명칭은 사양서에 작성을 요청함에 차기회의부터 3차 원재료 명칭을 작성하기로 함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신규제안 생협함께 생리대 4종(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롱라이너) 아임오 생리대와 고분자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점과 날개 부분까지 유기농 순면을 사용한 점에 대해 보고함 - 신규제안 생협함께 안전함께 소화용구(휴대용 소화기) 생협함께로 휴대가 간편한 소화기를 기회공급함을 보고 - 신규제안(부침가루, 튀김가루) 새롭식품 생산종료로 구레광의면 생산지로 변경 제조하여 공급함을 보고 - 사양변경(유기농 바닐라 컵아이스크림) 바닐라 시드(씨앗)에서 바닐라 빈(콩)으로 원재료 변경되어 공급됨을 보고 - 사양변경(두레유기농초코볼) 기존 수입 전지분유에서 국내산 전지분유로 변경됨을 보고 - 생산지 변경(제주감귤 주스, 제주한라봉 감귤주스) 기존 해피브릿지로지스 생산지 사업종료에 따른 제주지역 올레팜 산지로 변경 공급 공급됨을 보고. 단, 주스 제조처는 동일함을 안내
4차	5/11(목)	11조합 - 대면회의 11조합	○ 총 5개 유형 7품목 제안 ○ 선정회의 결과 - 간식거리 1종 및 유제품 2종 / 총 2개 유형 3품목 베리 카카오파이(공통생활재 취급결정) 딸기잼의 양을 줄여 단맛을 줄이면 전체적인 맛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안내하고 현 배합비를 유지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답변함. 또한, 시

			트에 사용하는 가공버터의 경우 무염버터로 개선 후 출시함에 따라 원가 인상이 있음을 답변함. 시트에 식감 차이는 개인별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답변함 새롭식품에서 기존 공급중인 우리밀 초코파이를 중단할 경우 기존의 맛과 동일하게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신규로 땅콩 초코파이도 준비중에 있음을 추가 설명함. 유기농 딸기 컵 아이스크림(공통생활재 취급결정) 플라스틱수저를 나무수저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가 있었으나 어렵다고 답변함. 곡물(쌀)에서 추출한 이소말토올리고당을 사용하였으며, non-gom 서류 확인 되었음을 설명함. 타사와의 가격차이는 1회 moq(10만개)제작으로 소비가 어려운 부분과 딸기 7.57%, 유크림 8% 함량이 더 많이 사용됨과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생산시 로스율이 높은 부분 때문임을 추가 보고함. 오미자로쭈(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점성 부분을 마분말로 대체하여 공급함을 보고함. 새롭식품에서 중단된 아이스크림류 재공급 문의에 네니아 생산지로 변경하여 NB로 개발 제안하였으며, 추가로 우유 아이스크림 공급도 검토중임을 답변함. - 건강식품 1종, 불미나리 인진썩즙(공통생활재 / 팔당생명 미취급) 불미나리, 인진썩 재배환경 문의에 화순지역 백아산 계곡물 1급수 일대 25만평토지에서 직접재배한 원물을 가공하여 사용함을 답변함. 추가로 미나리를 이용한 염증에 도움을 주는 액상차류 개발예정임을 안내 - 음료 1종, 유기농 녹차 콤부차(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지역생협에서 독자로 취급하는 생활재를 연합회에서 검토 제한함을 보고. 기존 판매가를 유지하며 생산지 매장방문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 계획임을 안내. 특히 5~8월 하절기 이용증대 및 할인행사보다는 물량소비를 위한 1+1행사로 기획함을 보고하고 기존 디자인이 좋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답변함 - 육가공 2종 치킨 안심가스(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염지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정규 출시시 점검하여 개선 후 공급 예정임을 답변함. 빵가루에 백설탕 사용은 완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함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답변하고 원재료중 일부 첨가물 사용에 대해 기존 소시지와 카레에도 사용하는 천연 향신료임을 답변함. 일부 근막 제거 선별이 안된 부분은 선별강화하여 개선 후 출시하는 것으로 답변함. (수제)표고한우 떡갈비(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식감이 너무 질기다는 문의에 힘줄부분의 제거가 덜 되어 그릴수 있음으로 작업시 힘줄 부분을 개선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답변함 두께를 줄일 수 있는지 문의에 떡갈비가 아닌 너비아니 느낌이 될 수 있다는 다수에 의견에 따라 제안한 두께로 출시하는 것으로 결정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신규제안 자장가루 새롭식품 공급중단으로 토리식품 생산지로 변경하여 공급 예정임을 보고하고 샘플 제작하여 기존생활재와 비교 테스트 진행 후 출시하기로 함
--	--	--	---

			- 신규제안 미국라떼 하절기 시즌생활재 부족으로 기획공급 후 종료하는 것으로 제안 보고함 - 신규제안 호박식혜 하절기 시즌생활재 부족으로 기획공급 후 종료하는 것으로 제안 보고함 - 신규제안 노르웨이순살고등어1KG(수입산) 국내 고등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입산 고등어 취급배경에 대해 설명 23년 국내산 고등어의 어획량 물량확보 이후 수입산 고등어 취급여부를 재검토 후 공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신규제안 축산 부산물(닭발, 뽕집, 기타등등) 축산물의 경우 도축시 무항생제 계육 원물을 사용하나 제조시설 설비라인의 완전 부리가 어려움으로 일반사양으로 표기하여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공급 전 항생제 및 시험성적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후 공급함을 보고함. - 상생마켓, 협동조합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유통채널 지원사업 관련 보고 사업기획팀 김영선선임매니저가 협동조합 판로지원 사업생활재 및 예산에 대해 설명함.
5차	6/8(목)	10조합 - 대면회의 10조합	○ 상반기 생산지방문 일정으로 연생위 진행 - 생산지 견학 2곳(강화초록식품, 손맛식품) ○ 총 5개 유형 6품목 제안 ○ 선정회의 결과 - 화장품 1종, 산다화 비타민C 화이트닝 토너(공통생활재 취급결정) 해당 생산지 자사몰 할인 판매시 당회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문의에 생산지 할인시 당회와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답변 보고함. 비건 인증취득 받은 부분을 강조하여 첫 출시시 홍보를 강조하여 공급 - 건강기능식품 1종, 우슬닭발액(공통생활재 취급결정) 당회 공급되는 부산물의 경우, 일반사양으로 공급될 수 밖에 없으나 제안드린 닭발액의 경우 건강 컨셉에 맞게 무항생제 인증 닭발 원물을 사용하여 시중과의 차별성을 갖춘 생활재로 공급함을 설명함.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사양변경 라면 3종(감자, 해물, 사리면) 새롭식품 감자라면 3종의 사양변경(감자분말 제외 -> 감자전분만 사용)에 대해 상세내용 설명하고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 신규제안 조미김 2종(파래, 곱창) 겨울철 공급하는 파래김, 곱창김의 이용저조로 하절기 고온다습함으로 원초 품질문제 발생 이슈가 있음에 조미김으로 가공하여 재고소진시 까지 기획 공급함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사용 원재료에 대한 문의에 현미유와 정제소금이 사용되었음을 답변함.
6차	7/13(목)	13조합 - 대면회의 10조합 화상회의 3조합	○ 총 8개 유형 14품목 제안 ○ 선정회의 결과 - 양념/조미 2종_스위트 칠리소스, 자장가루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스위트 칠리소스] 타사 대비 낮은 매입가로 협의 되었으나 단체 간 마진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가격차이 발생함을 안내함 단맛이 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일사양 기 공급중인 단체의 후기가 나쁘지 않

		고 생활재명의 ‘스위트’가 기재되는 만큼 제안 사양 유지로 논의 됨 [자장가루] 중단 생활재 대비 맛이 부드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의견 - 간편식 1종_부대찌개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비엔나 스파이스 성분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복합조제식품으로 각종 향신료로 구성된 성분이며, 미온에 경우 요리수 임을 안내함 - 유제품 3종_모짜렐라, 스트링치즈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슈레드치즈(보류) 생활재의 질과 맛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슈레드 치즈의 가격이 중량대비 높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2종에 경우 PB공급이 가능하나 슈레드치즈의 경우 MOQ 문제로 NB로 제안하며 중량과 가격 설정 되었음을 안내함 슈레드 치즈의 경우 중량이 타사대비 적음에 따라 가격차이의 체감 역시 큰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가격협의 후 가능여부에 따라 재보고 예정 - 공정무역 1종_공정무역 건과일 믹스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공정무역 생활재의 행사/교육/샘플러 역할로서 제안함을 설명함 건과일 4종의 혼합 과정이 ‘가공’으로 포함되어 과세상품으로 구분됨을 설명함 - 반려동물 3종_애니먼 습식캔(닭&소), 애니먼 습식캔(닭&연어), 애니유 펫밀크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표기 관련 문의에 대하여 포장재 뒷면을 통해 기재되고 있음을 안내함 - 위생용품 1종_그리네라 대나무 화장지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대나무 화장지류 중 중단된 다른 품목(미용티슈 등)의 공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향후 추가 개발의지가 있음을 설명함 휴지 길이에 차이에 대하여 당회 공급중임 생협함께 휴지에 경우 40M, 중단된 대나무 화장지의 길이 약30M으로 제안 생활재 27M과 유사함을 안내함 - 화장품 2종_비타미백앰플, 히알리온 수분앰플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스포이드, 펌프 관련 불량에 대하여 용기 변경 과정에서 점검하여 진행 예정임을 설명함 개선 전보다 흡수력, 사용감이 우수하다는 의견 - 건강식품 1종_유기농 노니즙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공정의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착즙 과정은 동일하며 기존에는 국내에서 냉동으로 수입한 노니를 착즙하다보니 색상이 짙고 맛이 강하였지만 원산지에서 신선하게 착즙하며 맛과 색상이 개선된 부분 설명함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신규_양배추케일쌈과 견과강된장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원부재료의 두레인증 사용에 대하여 현재 공급 전으로 물량 산정이 어려워 공급 과정에서 가능여부 검토하여 개선 예정임을 설명 - 신규_스텐 주방용품(밀폐용기 등)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 사양변경_발아검정콩 미숫가루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성분 변경에 따른 맛의 차이에 대하여 삭제된 성분 뉘논이콩이 생활재 맛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설명함 - 기획보고(사회적 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 / 농공상진흥사업) 현재 사업기획팀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진행경과에 대하여 보고함
--	--	--

7차	8/10(목)	대면회의 9조합	○ 선정회의 결과 - 반찬_바르게 만능 어묵 5종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당회 공급중인 어묵류의 중단 예정임과 제안 생활재 역시 동일하게 연근해상이 아닌 선상에서 가공한 원육 사용함을 안내함 유당처리시 사용하는 현미유의 표기 관련 부분에 대하여 식약처 통해 재확인후 문 제소지 여부 확인후 진행 예정임을 설명함 - 간식_유기농 건과일 2종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공정무역 사양이 아닌 일반 수입 유기농 사양이나 취약 카테고리 활성화 및 다양한 간식류 공급을 위해 제안드리며, 향후 공정무역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중단 후 대체 공급 예정임을 설명함 건크랜베리에 사용된 해바라기유는 당절인 이후 과건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함을 설명함 사탕수수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어스팩 포장재 사용함을 설명함 - 간식_유기농 호두강정 주 원물인 호두의 수입산 사용에 대하여 국내산 호두 사용 우선 검토 진행하였으나, 원물 가격이 키로당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사용 어려움을 설명함 지속적인 호두 원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사양 개선 가능함을 보고함 - 간식_쌀로팝 3종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일본산 탄산칼슘 사용에 대하여 미국산 또는 터키산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발생하는 관능점검 이후 원산지 변경 예정임을 안내함 제안 품목중 꿀맛공에 경우 눅눅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굽는 온도를 높여 개선 가능함을 설명함 - 건강식품_기찬 유기농 구기자인진쑥꽃 (공통생활재 취급결정) 유기농 원재료 소비에 도움이 되는 생활재로 명절기간 선물세트도 운영 예정임을 안내함 더 진한 맛으로 개선 요청에 대하여 원물의 특성상 농축 과정을 늘리더라도 더 진해 지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함 조합원 수요가 적을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하여 NB생활재고 재고부담이 적고 카테고리의 다양화 측면을 고려해 제안드림을 설명함 - 공정무역_건애플망고 애플망고 슬라이스의 두께 차이에 대하여 원물 크기의 편차가 있음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생산지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함을 설명함 - 공정무역_유기농 미니 밀크 초콜릿 제안된 100개입보다 작은 단위의 소포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재 별도 소분처가 부재하고 소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 증가가 조합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에 저해가 될 것이 우려됨을 설명함 - 생활용품_알뜰형 세제 2종(세탁세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일반 세제 대비 제외된 성분에 대하여 품위에 저하가 없는 수준에서 부가성분을 제외 또는 생산성이 높은 성분으로 대체하였음을 설명함 [주방세제] 기 보고 및 승인 된 기금마련주방세제의 개발 목적을 강화하여 가격과 사양측면을 개선하여 재 보고 하는 내용임을 설명함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샘플 생산과정에서 이슈로 미진행된 그린팜에 경우 포장 관련 개선이 가능하여 당일 간략히 설명 및 시식 진행후 9월 정식보고 예정임을 보고함
----	---------	-------------	--

8차	9/14(목)	대면회의 13조합	○ 선정회의 결과 - 육가공_수제주먹햄(200g)가칭(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프락토올리고당 자사 공급분으로 변경 관련하여, 해당원료 당회 공급 생활재와 기 사용 간 가격차이가 과도함에 따라 조합원가 인상폭이 높아 어려움을 보고함 진공포장 제외하더라도 멸균처리 진행함에 따라 기 제안드린 유통기한 24개월 운영에 차질 없음을 보고함 1kg대용량 생활재도 가능함을 안내하며 급식용 생활재로 적합하다는 의견 수렴 - 간식_한입통밀레몬쿠키 (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레몬맛이 약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100% 레몬주수를 사용하여 기타 향료등을 사용하지 않아 약하게 느껴지나 NB생활재 품목으로 사양 변경은 어려움을 보고함 원재료중 밀가루의 산지 변경 요청에 대하여 현재 밀가루 납품처는 품목 제안 제조사와 협약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고있는 바 원재료 산지 변경시 발생하는 조합원가 인상 폭이 높음을 보고함 포장재 변경에 대하여 NB생활재임에 따라 어려움을 보고하고, 파손 위험 방지를 위하여 매장 주문 시 7개입 박스단위 발주로 운영 예정임을 보고함 - 공정무역_사탕2종(박하사탕/달고나사탕)(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박하사탕의 박하 함량에 대하여 약간 강한편이긴 하나 생활재 개발 목적에는 부합하여 함량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됨 박하유의 경우 일반사양의 수입산 사용을 보고하며, 국내산 사용시 가격차이가 과도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변경 어려움을 보고함 샘플에서 발생한 써내 관련하여 공정에서 코팅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기름을 통해 발생 요인 예상중이며 각 공정에 대하여 담당자가 직접 산지 방문하여 정식공급시 해당 현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을 보고함 - 화장품_손스러운 율피비누 (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동일 품목에 대하여 마진구조의 차이에 따라 아이쿱대비 가격차이 발생함을 안내하며 최대한 가격조정한 안으로 제안함을 보고함 올인원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제안 생활재 특성 상 유통기한이 많은 부위에 사용 추천함을 설명함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한방차 선물세트 2종 (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진한 맛이 적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મે게 마시는 타입으로 농축액이 아닌 원물을 다려냄에 따라 진하기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며, 명절시즌 기획 생활재로 향후 정식 공급시에는 맛과 진하기 조정 가능함을 보고함 - 생협함께 반려묘 사료(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당회 공급중인 반려견 사료의 후속으로 생협함께 품목으로 공급 예정임을 보고함 원재료 중 국내산 참치는 수입산 참치와 어획량과 크기가 다를음을 보고함 - 오색 송편만들기 키트 추석시즌 기획 생활재로 공급 예정임을 보고함 - 양갱선물세트 추석시즌 기획 생활재로 공급예정임을 보고함 날개판매 가능여부에 대하여 금번 명절시즌 선물세트 공급 후 현황에 따라 단품에 대한 상시공급 가능여부 점검 가능함을 보고함 - 초당옥수수
----	---------	--------------	---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하여 타사는 무농약 사양이나 제안 생활재 유기농 사양으로 가격차이 발생함을 보고함 - 복숭아 병조림 선물세트 명절시즌 한정수량 운영되는 기획생활재로 보고함 - 우리밀쌀우동면 사양변경 - 젓병세정제 생활재명 변경
9차	11/9(목)	대면회의 11조합	○ 선정회의 결과 - 마실거리_자두콩순아이티(공동생활재 취급 결정) 작두콩 함량 증가에 대하여 함량을 늘리는 경우 식용차로 즐기기에 부담스러운 향미가 우려되어 물처럼 가볍게 마시는 생활재 개발 의도되는 상이함을 설명함 그럼에도 공급 이후 맛에 대한 피드백을 모니터링하여 리뉴얼을 통한 맛 개선 작업 예정임을 보고함 - 마실거리_따뜻해요 생강대추(공동생활재 취급 결정) 생활재 맛과 향의 진하기에 대하여 농축하지 않는 품목의 특성상 더 이상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고 함량을 늘리는 경우 텁텁한 맛이 발생하여 조정 불가함을 보고함 데워서 마시는 경우 향이 더 올라오고 점도는 조합원들은 오히려 가볍게 음용하기 좋았다는 의견 (एको생협 미취급 결정) - 공정무역_공정무역 유기농 브라질너트(공동생활재 취급 결정) 사용기한 및 유통기한에 대하여 식품유형이 농산물임에 따라 별도 법적기준 부재하여 유통기한 형태로의 기재는 어려운 상황이며 포장일자 및 생산년도를 기재하고 상세 페이지 통해 개봉후 섭취기한 12개월로 안내 예정임을 보고함 현재 포장재에는 미적용되었으나 향후 정식 공급시에는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패키지에 포함하여 적용 예정임을 보고함 (एको생협 미취급 결정) - 공정무역_아이브루 플러스 블랙커피 2종(오리지널 공동생활재 취급 결정 / 스테비아 선택생활재 취급 결정) 현재 커피류 현황에 따라 부족한 부분(인증여부와 가격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는 생활재임을 보고함 스테비아의 안정성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천연 감미료로 구분되는 효소처리 스테비아는 2006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섭취를 통한 인체 부작용이 없으며, 당뇨와 체중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음을 보고함 열처리 유산균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개발 과정에서 차별화와 마케팅 포인트를 위해 첨가되었음을 보고함 (안양YMCA등대생협, 울림두레생협, 참좋은두레생협 스테비아 미취급 결정) - 생활용품_아임오 입는 오버나이트(공동생활재 취급 결정) 요실금 팬티로 겸용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생리대와 용도 차이에 따른 흡수력의 이슈로 병행 이용은 어려움을 보고함 XL사이즈 공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출시되는 현황에서 현재 사이즈 확대는 어려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임을 설명함 착용 사이즈에 대하여 속옷사이즈 기준으로 중형은 90 대형은 95~100사이즈로 안내됨

			을 보고함 - 화장품_그레인 수분미스트(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미스트 관련 수요가 적다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공급중인 미스트의 가격이 과도한 부분과 편의성이 우수하여 젊은 조합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활재임을 보고함 - 생활용품_그레인 보습바디크림(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대용량 구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현재 기획용으로 별도 생활대 개발 검토 중이나, 제안 생활재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합원가 책정으로 대용량에 따른 가격 인하요인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함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반려동물_생협함께 반려간식 6종(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신규 공급 관련 보고 진행하며, 출시 예정일에 대하여 현재 디자인 작업중으로 명확한 일정 수립은 되지 않았음을 보고함 - 마실거리_폴이키온 수세미오이(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금년도 기획공급 이후 반응이 좋은 경우 차후 계약재배등을 통해 공급기간을 늘릴 예정임을 보고함 제안 조합원가의 가격 수준에 대하여 일반시장에서도 7~8,000원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고함 - 사양변경_흑염소엑기스 흑염소의 무항생제 -> 일반 사양 변경에 대한 내용 보고하며, 농장의 무항생제 인증 취소는 항생제 사용등에 이슈가 아닌 사용 면적 당 두수에 대한 기준초과이며 점검결과 당회 공급분에 일반사양의 혼입은 없었음을 보고함 취소된 무항생제 인증은 재인증을 위해 1년에 기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고함 해당 내용에 대해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별지를 제작하여 흑염소 포장에 동봉 예정임을 보고함 - 용기변경_현미유(500ml)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용기에서 -> 멸균팩으로 변경됨을 보고하며, 입구가 넓어 사용에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하여 플라스틱 최소화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함
10차	12/14(목)	대면회의 13조합	○ 선정회의 결과 - 마실거리_케일사과주스(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케일 함량이 적다는 의견에 대하여 테스트 과정을 통해 음용이 용이한 적정 배합을 계산하여 제안하는 부분으로 케일을 증량하는 경우 녹즙과 같은 걸쭉한 제형이 되고 향이 강해져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발생함을 보고함 장기보관시 침천물의 변질여부에 대하여 생산 공정에서 살균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질 위험은 낮음을 보고함 시중과 원물 차별성이 부족하고 당회 공급산지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무농약 또는 유기농 사양으로 원부재료의 변경시 발생하는 가격 상승폭이 높아 일반사양으로 제안 드림을 보고함. 원재료 사용에 대하여 제조처 생산지 계약 농가가 아닌 당회 공급 생산농가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가능하며, 두레인증 활성화와 조합원에 대한 어필을 위해 점진적

		으로 당회 농가의 원물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의견 색상이 이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케일과 사과를 혼합하는 제형 특성상 신선함을 느끼는 녹색을 띄우기 어려움을 보고하며 해당 부분 보완을 위해 유리병이 아닌 음료색이 노출되지 않는 파우치 포장재 적용 예정임을 보고함 - 반찬_두레생협 담백한 참치 4종(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당회공급중인 오리지널에 경우 올리브유를 사용하였으나 가미참치에 특성상 현미유를 사용하였음을 보고함 참치 원물에 대하여 환경호르몬(미세플라스틱), 방사능, 중금속 등 안전과 관련한 별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 공급중인 생활재와 동일하게 MSC인증(생태계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어획이 아닌 수산자원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인증) 참치임을 보고하며, 베트남산을 사용중임을 보고함 카레맛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어 당회 공급중인 카레분말을 사용함에 따라 시중과 맛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함 카레맛 원료 중 강황의 원산지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내산 사용 시 발생하는 가격 인상 폭이 높고 향과 맛이 약한 부분으로 변경 어려움을 보고함 참치가 으개져 공급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생산지에 개선 요청하였으나, 캔이 아닌 파우치 포장재를 적용함에 따라 물류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으로 개선 어려움을 보고함 4종 참치의 각각 맛 특색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합성첨가물을 최소화하여 당회 취급기준에 맞춘 레시피를 개발하다보니 시중 제품과 같은 강한 맛과 향을 내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함 산지와 논의를 통해 산정한 최종 조합원가는 2,300원임을 보고함 (울림두레생협 4종 모두 미취급 결정/레토르트 멸균 생활재로 인한 미취급) - 양념/조미_마파두부소스(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단맛이 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NB생활재지만 생산지 신규 출시 전으로 배합비 조정 가능하여 올리고당 함량을 10%에서 7%로 감량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함 포장재 변경에 대하여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및 보관을 위해 레토르트 멸균 공정을 적용한 포장재로 개발중임을 보고함 원료 중 돼지고기가 한 살림 산지 사용됨에 따라 당회 공급산지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당회 거래생산지의 원물 가격이 기존대비 차이가 많이 변경 어려움을 보고함 두부 한 모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소스량이 부족하여 증량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제안드리는 중량은 유지하고 향후 대용량 기획공급을 별도 준비하는 것으로 답변함 유기농 참기름에 경우 NON-GMO사양임을 보고함 엑상진소스의 2차 원부재료중 가쓰오부시의 원물 원산지에 대한 확인요청으로 차기 회의에서 보고드리는것으로 답변함 (울림두레생협 미취급 결정/레토르트 멸균 생활재로 인한 미취급) - 간식_우리밀마늘토스트(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가격비교되는 시튼베이커리와는 가공버터 사용, 마늘함량 차이등 사양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며, 최소 생산량 이슈로 제조 생산지와 직접거래 어려움에 따라 유통비용이 추가됨을 보고함 포장 개입 수를 줄일 수 있냐는 의견에 대하여 20개입 포장으로 제안드리나, 날개 개별포장으로 판매가능하게 표기가 되어 있음을 보고함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해 날개 포장이 아닌 벌크 포장 가능하냐는 의견에 대하여 NB생
--	--	---

		활재의 한계로 포장 규격 변경은 어려움을 보고함 - 공정무역_공정무역 잉카소금(공통생활재 취급 결정) 제안생활재의 검토가 시기상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하여 공정무역 생활재의 특성상 업무진행의 소요기간이 오래걸리고 이슈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안드림을 보고함 염전 바닥의 황토 및 불순물 혼입 위험에 대하여 생산 과정에서 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성 확인되었음을 보고함 생활재 관련 홍보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해당 국가 생산지를 통해 전달 받아 활용 예정임을 보고함 김장시즌 대응량 기획 공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내 소분되는 생활재로 수요가 있을 시 진행 가능함을 보고함 가는 입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는입자/중간입자 2종으로 취급 가능하며 진행 예정임을 보고함 (팔당두레생협 미취급 결정/현재 국내산 소금 공급에 이슈가 없음으로 인한 미취급(추후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인한 이슈시 취급여부 재논의)) ○ 기타사항(당일보고 포함) - 신규_(기획)마들렌 선물세트 - 연말 시즌기획 생활재로 예약 진행중이며, 국내산 우리밀(토종 앳은키)과 공정무역 유기농설탕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베이커리류 생활재를 시범적으로 기획 공급함을 보고함 - 냉동생활재로 상온에서 1시간 해동 후 이용 가능하며 친환경 포장재 FSC인증(산림 및 목재와 종이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무분별하게 벌목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관리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인증제도) 종이와 공기를 잉크 등 사용으로 친환경적 생활재임을 보고함 - 사양변경_우리밀모나카선물세트 기존 12개입에서 9개입으로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내용 보고하고 조합원가 또한 인하되었음을 보고함 - 사양변경_새알볼 기존 새알심이 쉽게 퍼지는 현상 개선을 위하여 감자전분을 첨가하며, 기존 무농약 찹쌀과 멥쌀을 유기농 사양으로 변경함을 보고함 - 사양변경_세제류4종(액상주방세제, 액상세탁세제, 중성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환경표지인증 획득을 위한 사양변경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진행중임을 보고함 주 세정성분을 유분 세정력이 강한 성분으로 변경하고 방부성분을 식품첨가물로 변경 및 향 강화를 위해 단일 오일 증량등 사양 변경에 대하여 보고함 - 사양변경_옛날팔죽 기획 공급했던 옛날팔죽에 홍성풀무 새알심 10.1%가 추가되면서 팔, 백미등의 일부 원재료 배합 함량이 조정 되었음을 보고함
--	--	---

▶ 평 가 : 두레생협에서 취급하는 생활재들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조합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 복지위원회

1) 홀몸 어르신 간편식 봉사활동

- 일 시 : 매주 목요일 09:00 ~ 12:00
- 내 용 : 안양시 만안구 독거노인 8가구에 간편식 반찬전달
노인 분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등)의 균형을 맞춘 메뉴로 구성함
- 복지기금 기부현황 : 32명의 조합원과 직원이 기본 1구좌 이상의 복지기금을 기부하고 있음.
현물 기부 및 반찬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음.
- 2023. 8. 31(목) 간편식 반찬전달을 끝으로 종료함.

▶ 평 가 : 복지기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 활동을 다양하고 폭넓게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 공세알 편집위원회

1) 공세알 웹자보 발행

- 일 시 : 매월 1회(매월 3일~4일 11시 이전 발행)
- 내 용 :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해 발행했던 월간 소식지를 2021년 11월부터 웹자보(모바일)를 통해 바른두레생협 활동과 소식을 조합원에게 전달함.
- 23년 12월 현재 직원 3명으로 편집위원회구성
- 세부항목 : 신규조합원안내, 중요행사(달력), 조합원 소개, 생산지 소개, 생활재 소개, 생활재 레시피, 생활재위원회 활동, 지속가능 캠페인, 바른두레탐방, 바른도서탐방 등

▶ 평 가 : 직원의 퇴사로 감축된 인원, 직원의 사무실 업무와 편집위원회 동시 수행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까지 발행 이후 공세알 발행 보류 중입니다.

2024년 1~3월중으로 이사님들 포함 편집위원회 재정비 후 발행예정입니다.

웹자보 구성, 원고정리, 연동 프로그램 등의 보완 후 편집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차 안정적인 편집 활동과 진행 기대합니다.



■ 환경캠페인

1) 21% Party

- 일 시 : 2023년 4월 7일 (금)
- 내 용 :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성조합원에게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재사용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함
["바꿔입고 나눠 입는 옷으로 지구를 지키는 파티"]

- 장 소 : 두레생협연합회 메인홀(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6가길 52)

2) 종이팩재활용 집중캠페인

- 일 시 : 8월 한달간!
- 방 법 : 매장에 우유팩 20장을 모아오면 화장지 1롤(3겹) 1개를 드림.
- 내 용 :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종이팩 재활용 집중 캠페인.
(자원도 아끼고! 지구도 살리고!)

3) 기후정의 대행진

- 일 시 : 9월 23일 (토) 14:00
- 내 용 : 기후위기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대행진을 하며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알림.
- 장 소 : 세종대로 (시청역 7번 출구~승례문)

4) 생명나눔한마당 캠페인

- 일 시 : 10/23(월)~11/5(일)
- 내 용 : 지구의 환경을 우선하는 건강한 먹거리 홍보 및 "판매장터"
- 장 소 : 영통점

▶ 평 가 : 기후위기나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먹거리등 생협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을 위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 공정무역 캠페인

1) 2023년 민중교역캠페인

- 일 시 : 2023년 5월11일 (목) 11:00~13:00

- 내 용 : 신청 조합원님들께 공정무역의 개념과 의미, 실천방법에 대해 강의 후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한 샐러드 & 스ك럽 만들기를 함
- 장 소 : 바른두레생협 동탄점

2) 세계 공정무역의 날 [팍 없는 경품행사]

- 일 시 : 2023년 5월 13일 (토)
- 내 용 : 공정무역생활재 매대를 준비하고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신 조합원님께 팍 없는 경품행사(공정무역생활재 경품)를 진행하며 공정무역생활재를 친근하게 알리고 공정무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장 소 : 바른두레생협 전 매장

3)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기초과정

- 일 시 : 2023년 5월 11일~5월 20일
- 내 용 : 공정무역에 관심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의 기초를 전달하고 초,중,고 공정무역 수업 강사와, 소그룹 시민 캠페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함
- 장 소 : 안민교회 1층 등지작은도서관

4) 창립 38주년행사 및 공정무역 뽑기 이벤트

- 일 시 : 2023년 5월 18일 (목)
- 내 용 : 공정무역 응원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작성해주신 조합원님께 공정무역 생활재 뽑기를 함
- 장 소 : 바른두레생협 영통점

5) 2023년 안양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 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4:00~18:00
- 내 용 : 안양공정무역협의회 부스에서 공정무역과 공정무역 제품을 소개함
- 장 소 : 범계역 광장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1층)

6) 공정함을 열다

- 일 시 : 2023년 6월19일~11월24일
- 내 용 : 안양거주 조합원대상으로 네명이상 단체 모집 (8팀 모집)
공정무역 안내와 공정무역 제품 선물로 증정
- 장 소 : 안양점, 평촌점, 인덕원점, 명학점 중에 요청하는 장소

7) 안양 춤 축제

- 일 시 : 9월24일 (일) 12:00~18:00
- 내 용 : 일반시민대상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생협을 알리는 활동
(리플렛 배포 및 홍보)
- 장 소 : 평촌 중앙공원

8) 2023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 일 시 : 10월27일(금)
- 내 용 : 공정무역 생활재 전시 및 홍보하고 판매함.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9) 2023 안양 공정무역 포트나잇 (안양)

- 일 시 : 10월31일(화)
- 내 용 : 안양시 공정무역 재인증 및 현판 제막식
- 장 소 : 안양시청 본관 및 4층 회의실

- ▶ 평 가 : 환경과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인식확산과 함께 공정무역물품을 직접 체험하고 설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생협이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공정무역의 홍보효과가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산지 방문

1) 가을향기농장

- 일 시 : 2023년 4월 6일 (목)
- 내 용 : 전통장의 제조 과정을 알아가고 생산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
-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하사천길4번길 25
- 참가비 : 10,000원

2) 장수이야기

- 일 시 : 2023년 5월 12일 (금)

- 내 용 : 흑염소 제조방법 설명 & 생산공정 견학과 질의응답
-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5번길 186-46
- 참가비 : 15,000원

3) 스페이스SEON:[仙]

- 일 시 : 2023년 6월 28일 (수)
- 내 용 : 생산지 견학, 생산자와의 대화, 올인원 비누 만들기 체험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솔무정길 35-1
- 참가비 : 20,000원

4) 씨에이치하모니

- 일 시 : 2023년 7월 28일 (금)
- 내 용 : 연구소&화장품 제조공정 견학, 생산자와의 대화
-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6, 218~222호,226호
(관양동,평촌오비즈타워)
- 참가비 : 10,000원

▶ 평 가 : 조합원님들의 생산지 방문 후 좀 더 생활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치를 알아갈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생산지와 조합원의 바람직한 교류가 이어졌다는 좋은 평가입니다. 다만 하반기는 조직홍보직원의 부재로 생산지 견학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점차 생산자와 조합원의 교류 활동을 늘려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 신규조합원 행사

1) 신규조합원 만남의 날

- 일 시 : 매달 3째주 금요일 오전 10:30
-> 변경 : 2024년 1월(수원), 4월(안양), 7월(수원), 10월(안양) 진행예정
(2023년 11월 21일(안양) 진행함)
- 진 행 : 온라인(zoom)
-> 변경 : 대면으로 진행 예정 [수원권(매탄점) / 안양권(안양점)]
- 혜 택 : 생활재 교환권 10,000원 증정
-> 변경 : 산안마을 구운유정란(6입), 1종 주방세제(500ml), 유기농 마스크
바도 설탕(500g), 생협함께 미용사각휴지 1상자 증정

- ▶ 평 가 : 신규조합원 만남의 날을 통해 좀 더 조합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신규조합원님들이 생협은 이런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시에 신규조합원 만남의 날 참여를 유도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3년 신규조합원 만남의 날 신청 저조로 인한 잦은 행사 불발로 2024년부터는 진행횟수와 진행방법, 증정선물을 변경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활동

1) 바른두레생협 창립38주년행사

- 일 시 : 2023년 5월 18일 (목)
- 내 용 : 바른두레생협 창립38주년 행사로 인한 할인행사
- 장 소 : 전매장

2) 영어교실 소모임

- 일 시 : 2023년 10월 첫째 수요일 수업시작->매주 수요일 저녁 7:45~8:45 진행
- 방 법 : 온라인(Zoom)으로 수업 진행, 오픈채팅방에서 소통함.
- 수업료 : 10,000원 (전액 복지기금으로 사용예정)
- 강 사 : 이정우 이사장님
- 인 원 : 10명 (2023년 12월 기준)

3) 2023생명나눔한마당 in 화성물류센터

- 일 시 : 2023년 10월 14일 (토) 10:30~16:00
- 내 용 :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와 더불어, 두레생협

- 장 소 : 두레생협 물류센터 부지 (경기도 화성시 활초리)

4) 점장 워크숍

- 일 시 : 2023년 11월 10일(금)~11일(토)
- 내 용 : 점장 워크숍을 통해 매장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전략적인 경영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생협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함.
- 장 소 : 대부도

5) 일본 생활클럽 가나가와 생협과 정기교류

- 일 시 : 2023년 11월 17일(금)~19일(일)
- 내 용 : 일본 생협과의 정기교류를 통해 문화·경험의 공유와 지역 협력 강화로 발전적인 아이디어와 협업 기회를 모색함
- 장 소 : 일본 생활클럽 가나가와 생협

6) 조합원 연말 감사 행사

- 일 시 : 2023년 12월 20일(수)~21일(목)
- 내 용 : 12월 연말 조합원 감사 더-큰 혜택, 더-큰 행복 전품목 할인행사
- 장 소 : 전매장

7) 산타나눔행사

- 기 간 : 2023년 12월 22일(금)
- 내 용 : 조합원님들께 어려운 아동들에게 줄 생활재를 기부받고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어려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 방 법 : 조합원께 산타나눔행사에 대한 설명후 각 매장에 설치되어있는 산타주머니에 생활재 기부를 받고 22일(금) 산타주머니를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

8) 2023 바른두레생협 송년의 밤

- 일 시 : 2023년 12월 27일 (수) 19:00
- 내 용 : 2023년 한해 고생하신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2024년 새해 다짐과 함께 전직원의 단합을 도모
(즐거운 프로그램 진행, 맛있는 음식, 푸짐한 선물시상)
- 장 소 : 봉암식당 2층 전체

9) 책임조합원 감사 행사

- 일 시 : 2023년 12월 28일 (목)
- 내 용 : 바른두레생협 책임조합원 특별혜택-생활재 전품목 20% 할인행사 및 책임조합원 유지와 가입유도를 위한 행사
- 장 소 : 전매장

▶ 평 가 :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와 소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바른두레생협을 알리고 생협과 조

합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 총 평가

생산지방문과 다양한 공정무역활동을 통해 생협운동의 가치를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고 전파한 한해였습니다. 총 4곳의 생산지를 방문하였고 함께 방문했던 임직원과 조합원님들은 평소 사용하는 생활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급되는지 알게 되고, 생산자님들은 조합원님과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다양한 생산지를 방문해서 우리 조합원님들과 더 많은 생산자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른두레생협은 안양과 수원 및 화성지역에서 다양한 공정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도 공정무역의 의미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4년에는 안양시청 등 공공기관의 매장에 공정무역 제품을 입점시키는 등 생활재의 판로를 확대해서 공정무역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조합원님들과 함께 하는 소모임 활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대면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조합원님들이 참여하고 싶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24년에는 실제 조합원님들이 참여하고 싶은 소모임활동을 조사하고 기획해서 예전과 같이 생협 안에서 폭넓은 조합원님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바른두레생협이 운영하는 여러 SNS 매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합원님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획관리부문

1. 기관 관리

1) 정기 대의원총회 (대면총회)

차수	일시	장소	주요의결사항
38차	2023.02.18.일 토요일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청 본관 강당 (3층)	.2022년 감사 보고 및 승인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3년 안양본점 등기이전 승인 .2023년 임원선출 승인 .2023년 바른두레생협 정관변경 승인

2) 이사회

차수	일시	장소	주요심의안건
1차	1/17	평촌점 2층조합원공간	-22년 사업 평가 및 결산의건 -바른두레생협 정관 및 임원선출의건 -법인보유차량 매각 및 중고차 구입의건
2차	3/21	명학점 2층조합원공간	-수입수산물 취급의건 -조합원 배송료 부과건의 -연합회 외상매입금 상환유예건의 -매장별 책임이사 선정건의
3차	5/23	명학점 2층조합원공간	-신물류센터 건축 추진 방향 논의의 건 -안양점 조합원공간 칸막이 공사건의 -명학점 영업시간 단축 및 매장임대계약연장의 건
4차	7/26	안양점 1층조합원공간	-매장설비교체의건 -동탄지역 무점포 택배배송전환의 건 -바로미도서관 운영의건
5차	9/19	안양 사무국회의실	-매탄점 실외기교체의건 -생명나눔한마당 행사진행의건 -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방문의건 -사회적기업 전환의건
6차	11/22	안양 사무국회의실	-매장사업팀 워크숍진행의건 -연말송년회 진행의건 -바로미도서관 폐관의건
7차	12/27	안양 사무국회의실	-임원 및 직원 급여인상의건 -보궐대의원 확정건의 -39차 대의원총회 일정확정의건

2. 조직관리

1) 조합원 확대

■ 전년대비 신규가입 조합원 증가현황

구분	조합원 수(명)	순증가	증가율(%)
2017년	16,532	-432	95.7
2018년	16,536	4	100
2019년	16,697	161	100.9
2020년	16,871	174	100.1
2021년	17,171	300	101.7
2022년	17,791	620	103.6
2023년	17,950	66	100.8

■ 업장별 조합원 가입현황

(단위: 명)

구분	무점포	안양	영통	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명학	계
17년	121	105	140	230	205	165	143	163		1,272
18년	77	86	113	115	227	144	103	152		1,017
19년	74	70	84	130	126	169	118	83		854
20년	89	70	81	152	120	132	104	77		825
21년	80	126	100	121	142	125	109	97		900
22년	146	226	88	111	112	72	57	67	539	1,418
23년	208	87	71	91	103	62	40	63	67	792

2) 출자금

■ 전년대비 출자금 증가현황

구분	출자금액	증가율	순증가
2017년	1,347,266,081	99	-110,913,041
2018년	1,459,788,697	108.3	112,522,616
2019년	1,563,668,679	107.1	103,879,982
2020년	1,619,868,151	103.6	56,199,472
2021년	1,680,500,242	107.9	60,632,091
2022년	1,728,446,522	102.8	47,946,280
2023년	1,806,845,057	104.4	78,398,535

3. 대외 연대 활동

■ 두레생협 연합회

- | | | |
|------------|--------------|--------------|
| -총회 | -이사회 | -실무책임자회의 |
| -생활재 선정위원회 | -두레연합 지역별회의 | -총무·회계팀 회의 |
| -그루터기사업팀회의 | -개별나눔 담당자 회의 | -조직·홍보담당자 회의 |

■ 안양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

■ 안양지역급식네트워크

■ 화성공정무역협의회

■ 수원공정무역협의회

■ 수원지역급식네트워크

4. 기획관리활동

■ 교육부문

NO	일정	내용	교육기관	참가자
1	2023.06.28.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두레생협연합회	임정희 팀장
2	2023.08.23.~2023.08.24	두레생협 임원교육	두레생협연합회	이정우 이사장 주선미 이사
3	2023.11.01.~2023.11.30 (온라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더존에듀캠	전직원
4	2023.11.01.~2023.11.30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더존에듀캠	전직원
5	2023.11.01.~2023.11.30 (온라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더존에듀캠	전직원
6	2023.11.01.~2023.11.30 (온라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더존에듀캠	전직원
7	2023.11.01.~2023.11.30 (온라인)	퇴직연금 교육	더존에듀캠	전직원
8	2023.11.01.~2023.11.30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교육	더존에듀캠	전직원

5.인력현황 (2023.12.31.현재)

구분	본부	안양	영통	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명학	계
8시간	6	1	1	1	1	1	1	1	1	14
단시간		4	4	3	4	3	4	3	2	27
21년	9	5	6	5	6	5	5	4		45
22년	6	5	5	5	5	5	6	4	4	49
23년	6	5	5	4	5	4	5	4	3	41

6. 평가

•인사

-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시간 및 비용절감
- 이벤트 상품 판매에 따른 성과급 지급으로 매장직원 사기 진작
- 조직홍보 직원의 부재로 인한 인건비 감소

•회계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한 영업외 수익 창출
 -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매장지원사업 28,050,000원
 - .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 2,400,000원
- 수요맞춤형 1차,2차스토어 36.5 지원금 4,200,000(부가세포함)원
- 문자수신조합원 선별작업을 통한 문자비용 절감
- 안양매장 조합원공간 칸막이 공사로 인한 비용증가
- 매탄매장 실외기 교체로 인한 비용 증가
- 임대료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증가
- 배송지기 구인으로 인한 운반비 증가
-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비용 증가

2023년 손익계산서(안)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 정 명	제 39(당)기 원화		제 38(전)기 원화	
I. 매 출 액		7,772,993,664		7,795,664,602
상품매출	7,772,993,664		7,795,664,602	
II. 매 출 원 가		5,781,430,295		6,015,255,280
상품매출원가	5,781,430,295		6,015,255,280	
기초상품재고액	276,407,453		232,149,461	
타계정에서대체액				
당기상품매입액	5,758,192,441		6,083,140,063	
타계정으로대체액	17,085,548		23,626,791	
기말상품재고액	236,084,051		276,407,453	
III.매 출 총 이 익		1,991,563,369		1,780,409,322
IV.판매비와 관리비		2,030,450,137		2,016,046,114
급여	872,549,386		915,528,381	
상여금			9,865,000	
잡급			2,225,880	
퇴직급여	99,275,076		48,000,300	
활동비	15,931,950		17,229,860	
복리후생비	87,321,807		94,143,764	
여비교통비	1,160,300		439,450	
접대비	707,000		2,690,010	
통신비	48,703,042		61,922,192	
수도광열비	92,950,631		76,917,301	
세금과공과금	3,820,390		2,019,310	
감가상각비	44,813,663		63,308,153	
지급임차료	286,050,000		264,760,000	
수선비	6,371,355		5,000,054	
보험료	11,048,513		12,707,157	
차량유지비	6,196,966		10,481,202	

운반비	77,809,756		52,868,824	
교육훈련비	1,323,828		2,245,635	
도서인쇄비	215,300		184,000	
회의비	11,400,999		8,708,565	
소모품비	15,276,567		17,326,140	
지급수수료	299,724,452		317,711,494	
광고선전비	7,546,644		12,223,903	
판매촉진비	39,267,772		17,539,539	
대손상각비	984,740			
V. 영 업 이 익		-38,886,768		-235,636,792
VI. 영업 외 수익		43,478,859		75,211,041
이자수익	4,456,139		1,958,392	
지자체보조금	34,268,182		59,818,181	
판매장려금			7,689,889	
유형자산처분이익	1,852,545			
잡이익	2,729,465		5,550,485	
배당금수익	172,528		194,094	
VII. 영업 외 비용		9,255,727		10,490,612
이자비용	5,647,865		2,330,543	
기부금	1,782,222		2,909,096	
재고자산감모손실	443,126		74,153	
유형자산처분손실			568,216	
잡손실	1,382,514		4,608,604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4,663,636		-170,916,363
IX. 법인세비용		1,303,710		-15,300,135
법인세비용	1,303,710		-15,300,135	
XI. 당 기 순 이 익		-5,967,346		-155,616,228

2023년 재무상태표(안)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 정 명	제 39(당)기 원화		제 38(전)기 원화	
자산				
I. 유 동 자 산		486,485,964		511,445,901
(1) 당 좌 자 산		250,383,066		235,038,448
현금및현금성자산		80,325,894		99,829,699
매출채권	168,509,733		131,726,248	
대손충당금	(1,685,000)	166,824,733	(1,130,000)	130,596,248
단기대여금		1,000,000		1,000,000
미수금		204,531		580,750
선급금				268,650
선급비용		2,023,438		2,730,501
선납세금		4,470		32,600
(2) 재 고 자 산		236,084,051		276,407,453
상품		236,084,051		276,407,453
II. 비 유 동 자 산		1,551,228,422		1,547,977,208
(1) 투 자 자 산		891,091,827		868,015,859
출자금		891,091,827		868,015,859
(2) 유형 자산		233,666,595		253,491,349
냉동기기	306,188,941		299,188,941	
감가상각누계액(냉동기기)	(260,544,463)	45,644,478	(226,541,147)	72,647,794
차량운반구	60,610,967		72,075,548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56,249,105)	4,361,862	(72,071,548)	4,000
비품	82,238,387		80,988,387	
감가상각누계액(비품)	(73,747,656)	8,490,731	(66,878,555)	14,109,832
시설장치	624,562,780		615,471,871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442,983,329)	181,579,451	(438,858,858)	176,613,013
국고보조금(시설장치)		-6,409,927		-9,883,290
(3) 무형 자산		30,000,000		30,000,000
영업권		30,000,000		30,000,000
(4) 기타비유동자산		396,470,000		396,470,000

임차보증금		395,000,000		395,000,000
기타보증금		1,470,000		1,470,000
자 산 총 계		2,037,695,539		2,059,423,109
부 채				
I. 유 동 부 채		584,261,794		632,875,977
미지급금		119,175,381		105,233,590
예수금		1,167,520		1,533,940
미지급비용		4,626,670		602,615
선수금		22,741,414		17,045,588
포인트충당부채		1,968,476		3,680,345
매입채무		434,582,333		504,779,899
II. 비 유 동 부 채		180,596,791		226,141,367
장기차입금		150,000,000		1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1,246,951		172,535,286	
퇴직연금운용자산	(170,650,160)	30,596,791	(96,393,919)	76,141,367
부 채 총 계		764,858,585		859,017,344
자 본				
I. 자 본 금		1,806,845,057		1,728,446,522
조합원출자금		1,806,845,057		1,728,446,522
II. 자 본 잉 여 금				
III. 자 본 조 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 익 잉 여 금		-534,008,103		-528,040,757
법정적립금		4,384,858		4,384,858
미처분이익잉여금		-538,392,961		-532,425,615
당기순손익	-5,967,346		-155,616,228	
자 본 총 계		1,272,836,954		1,200,405,765
부채와 자본 총계		2,037,695,539		2,059,423,109

2023년도 예산대비 실적 대비표(안)

계 정 명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예산대비	비 고
I. 매 출 액	8,200,000,000	7,772,993,664	94.8%	예산매출대비 94.03%
II. 매 출 원 가	6,150,000,000	5,781,430,295	94.0%	매출대비 74.4%
III.매 출 총 이 익	2,050,000,000	1,991,563,369	97.1%	매출대비 25.6%
IV.판매비와관리비	2,103,850,000	2,030,450,137	96.5%	매출대비 26%
급여	952,000,000	872,549,386	91.7%	매출대비 11.2%
상여금	-	-		
잡급	-	-		
퇴직급여	95,750,000	99,275,076	103.7%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활동비	18,500,000	15,931,950	86.1%	조합원 및 이사장 활동비
복리후생비	94,000,000	87,321,807	92.9%	직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외
여비교통비	450,000	1,160,300	257.8%	
접대비	3,050,000	707,000	23.2%	
통신비	62,000,000	48,703,042	78.6%	매장 홍보문자외
수도광열비	80,000,000	92,950,631	116.2%	매장 전기료및관리비등
세금과공과금	2,000,000	3,820,390	191.0%	건축법이행강제금등
감가상각비	45,000,000	44,813,663	99.6%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263,500,000	286,050,000	108.6%	매장 및 사무실 임차료
수선비	5,600,000	6,371,355	113.8%	집기비품 및노후시설수리
보험료	13,500,000	11,048,513	81.7%	산재보험.차량및매장관련보험
차량유지비	10,000,000	6,196,966	62.0%	차량유류대 및 수리비
운반비	55,000,000	77,809,756	141.5%	매장배송기사 급여외
교육훈련비	3,000,000	1,323,828	44.1%	직원직무교육외
도서인쇄비	500,000	215,300	43.1%	

회의비	10,000,000	11,400,999	114.0%	총회.이사회.직원회의비
소모품비	15,000,000	15,276,567	101.8%	매장사용 및 각종소모품
지급수수료	330,000,000	299,724,452	90.6%	물류대행 및 카드수수료외
광고선전비	15,000,000	7,546,644	50.3%	연합홍보비외
판매촉진비	30,000,000	39,267,772	130.9%	판매촉진활동(포인트지급외)
대손상각비		984,740		매출채권의 1%유지
V. 영 업 이 익	53,850,000	-38,886,768	71.0%	
VI. 영업 외 수익	63,250,000	43,478,859	62.0%	
이자수익	250,000	4,456,139	87.1%	
지자체보조금	56,000,000	34,268,182	61.2%	지자체공모사업지원 선정등
판매장려금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852,545		
잡이익	7,000,000	2,729,465	39.0%	연합회 환급금외
대손충당금환입	-	-		
배당금수익	-	172,528		
VII. 영업 외 비용	9,500,000	9,255,727	97.4%	
이자비용	3,500,000	5,647,865	161.4%	
기부금	-	1,782,222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00	443,126	44.3%	냉장고고장등의 매장폐기
유형자산처분손실	-	-		
잡손실	5,000,000	1,382,514	27.7%	독자생활재부과금외
VIII.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100,000	-4,663,636	8250.4%	
IX.계속사업손익법 인세비용	-	1,303,710		
X. 당 기 순 이 익	100,000	-5,967,346	9554.1%	

복지기금

■ 복지기금 현황

구분	기금 입금			기금지출	잔액	비고
	조합원	기타	계			
2011.08~12	690,000	32,000	722,000		722,000	
2012	5,744,000	2,143,743	7,887,743	1,263,629	7,346,114	
2013	6,040,000	2,060,119	8,100,119	658,100	14,788,133	
2014	5,578,000	1,176,075	6,754,075	1,442,000	20,100,208	
2015	4,941,000	1,440,265	6,381,265	900,000	25,581,473	
2016	8,598,027		8,598,027	4,373,127	29,806,373	
2017	1,850,595	878,080	2,728,675	5,285,000	27,250,048	
2018	1,950,000	58,465	2,008,465	2,060,456	27,198,057	
2019	2,151,840	166,104	2,317,944	4,206,390	25,309,611	
2020	1,493,000	75,000	1,568,000	2,627,610	24,250,001	
2021	1,571,000	164,000	1,735,000	9,175,955	16,809,046	
2022	1,922,000	2,328	1,924,328	4,239,593	14,493,781	
2023	1,543,000	293,222	1,836,222	2,852,810	13,477,193	
누계	44,072,462	8,489,401	52,561,863	39,084,670		

-도움을 주시는 분-

박미자, 이인영, 김금난, 이미현, 이경숙, 남양선, 하은숙, 최금미, 이화정, 강은미, 김현숙, 박윤순, 현영숙, 함연주, 이승희, 김정순, 서원미, 안미선, 정혜경, 이경미, 정미희, 주연섭, 윤형미, 황희정, 김미정, 구선옥, 정서희, 이정우, 권애경, 이정미, 이정혁, 배경선 (2023년 12월 기준)

2023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I. 이익 잉여금 처분(안)

사업년도 : 2023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 처리 전 손실금 : 534,008,103 원
 - 전기 이월 손실금 : 528,040,757원
 - 당기 순손실 : -5,967,346 원

2. 처분(안)

이월 손실금과 당기순이익의 합 -534,008,103 원을 2024년으로 이월한다.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024년도 공통 슬로건

“미래가 있는 두레! 미래를 잇는 두레!”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2024년 매장사업부문 계획

■ 2024년도 핵심과제

경영안정화 및 지속가능함을 위한 사업부문 강화

■ 2024년도 핵심정책

- I. 매장사업 경쟁력 강화
- II. 수익구조 개선
- III. 사업 다각화

■ 2024년도 사업계획

1. 매출목표

- 총매출 목표 : 7,650,000,000원
- 매장매출 목표 : 6,750,000,000원-> 전년대비 2.6% 감소분 반영 (명학점 4월 폐점)
- 무점포매출 목표 : 900,000,000원-> 전년대비 7% 인상분 반영
- 마진을 목표 : 25.5% 달성!

- 2024년 매장 목표

	매장	2023년 매출액	2024년 목표액	2023년 가입조합원	2024년 가입목표
1	안양점	784,779,721	810,000,000	87	130
2	영통점	1,207,924,548	1,240,000,000	71	140
3	평촌점	1,131,311,901	1,150,000,000	91	140
4	천천점	1,048,684,057	1,080,000,000	103	140
5	동탄점	666,810,189	700,000,000	62	100
6	인덕원점	911,749,102	950,000,000	40	120
7	매탄점	672,002,530	700,000,000	63	100
8	명학점	504,551,878	120,000,000	67	30
9	무점포	840,609,739	900,000,000	208	300
합계		7,768,423,665	7,650,000,000	792	1,200

2. 핵심정책

1) 매장사업 경쟁력 강화

- 매장 내외부 환경 개선 (노후화된 설비 교체)
- 매장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생산자 초청 행사 등 매장 이벤트 역량 강화 (조합원 확대)
- 일간/주간 기획 프로그램 확대
- 물가안정정책을 활용한 기획 집중 개발
- 매장별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자체 캠페인 전략 수립/실행
- 사회적경제 생활재 개발 확대
- 연령대별 조합원 세분화 및 NEEDS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조합원 확대)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생활재 조사 및 개발 (조합원과의 소통 창구 확대)

2) 수익구조 개선

- 재고 및 할인율 관리를 통한 마진률 확보
- 비집중요일의 매출 확대 (요일별 특성화 전략 수립)
- 물가안정정책을 활용한 매장 프로모션 기획 확대
- 매출액에 따른 유연한 대응 (영업시간 및 근무자 수 조정 등)
- 생활재별 매출 데이터베이스 확보 (매출액/출고량별 전략 수립)
-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활용을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3) 사업 다각화

-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분야의 생활재 개발 및 홍보
- 매장 주변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 B2B 판매 영업
- 무점포(온라인) 조합원 확대 집중
- 오프라인(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실행
- 회원생협간 / 지자체와의 연대사업 강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수익사업 개발
-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연합회의 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

3. 월별 계획

1) 집중 생활재 기획

월	내용	월	내용
1월	설선물세트기획, 겨울방학 간편식 건강식품 *월간기획-한우찜갈비, 굴비	7월	초복/중복기획(전복/제주춘닭/민물장어) 여름보양식, 여름과일 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2월	울릉도고로쇠예약, 정월대보름음식, 메주 *월간기획-싱싱수산물	8월	말복기획(햇고춧가루/제주춘닭/민물장어) 여름보양식,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3월	신학기 및 환절기대비 환절기건강식품, 봄나물 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9월	추석선물세트 기획, 한우찜갈비/굴비 햇수삼/생오미자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4월	햇산양삼, 봄나물, 햇참외 및 햇과일 봄맞이 이불 행사 (코잡 광목이불)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0월	김장(절임배추/젓갈류/천일염) 예약 *생명나눔한마당 행사 생활재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5월	가정의 달 기획 행사 (선물세트 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1월	김장(절임배추/젓갈류/천일염) 집중기획 완성김치, 햇건구기자, 수능기획생활재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6월	하지감자/청매실/블루베리 등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2월	건강기능식품/크리스마스 케익/와인 판매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2) 월별매장 행사

월	내용	월	내용
1월	설 명절 행사	7월	초복/중복 기획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2월	대보름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8월	말복기획행사 안양점, 동탄점, 매탄점 주년행사
3월	신학기 기획행사/봄맞이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9월	추석 명절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4월	영통점, 평촌점, 천천점, 인덕원점 주년행사 / 조합원확대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코잠 이불 등)행사	10월	전매장 감사행사 *생명나눔 한마당 행사
5월	바른두레 39주년 창립행사 *책임조합원확대 및 감사행사 *사회적경제기업 생활재 특별 행사	11월	조합원 확대 행사 김장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6월	연합회 권역별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12월	연합회 권역별 행사 조합원 감사행사/책임조합원 감사행사

2024년 조직홍보부 계획

1. 2024년 조직홍보부문 목표

- '다시'조합원과 함께하는 바른두레생협 만들기

2. 사업방향

- 사업홍보 : 매장 홍보 콘텐츠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조직홍보 : 조합원 활동 확대 / 사회적가치 실천서비스 추진
- 캠페인 : 기후위기 대응 활동 확대 / 공정무역 캠페인 강화
- 기타 : 복지사업 정착화 / 일본생협 교류 정상화

3. 핵심과제별 주요사업(세부)

1) 사업홍보 부문

- 매장 홍보 콘텐츠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① 매장사업 이벤트/기획에 따른 다양한 홍보 콘텐츠 지원
- ②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 창구 확립(문자/카카오톡/밴드/인스타그램 등)
- ③ 월간지(공세알)을 활용한 생활재 홍보
- ④ '가치소비'의 이미지 구체화 및 홍보전략 수립/실행
- ⑤ 연령별/세대별 세분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2) 조직홍보 부문

- 조합원 활동 확대 / 사회적가치 실천서비스 추진

- ① 신규조합원 확대 전략 수립 (사업부문과 연계)
- ②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조합원 활동 기획
- ③ 생산지와와의 연대 강화 및 생산지 방문(체험) 활동 참여
- ④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전략 수립
- ⑤ 조합원 인재 발굴

3) 캠페인 부문

- 기후위기 대응 활동 확대 / 공정무역 캠페인 강화

- ① 제로웨이스트 특성화 매장 만들기 및 홍보
- ②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 참여
- ③ 기후위기 및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 ④ 지역별 공정무역단체 등과 연계한 캠페인 참여 확대
- ⑤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교육

4) 기타 부문

- 복지사업 정착화 / 일본생협 교류 정상화

- ① 아이돌봄/노인돌봄 사업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②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사업 전략 모색
- ③ 일본생협과의 교류 정상화 추진 (11월 일본방문 예정) - 교류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활동부문

목 적	활 동 명	활 동 계 획
조합원 활동 강화	조합원만남	- 제목: 신규조합원 만남 - 횟수: 8회 (안양권, 수원권 분기별 1회 실시) - 장소: 매장 조합원 공간
		- 제목: 생산자 온라인 강좌 - 횟수: 4회 - 장소: 온라인 (Zoom)
		- 제목: 식생활 강좌 - 횟수: 4회 - 장소: 안양 2회, 수원 2회
	요리컨텐츠 공모	- 공세알 레시피 소개 - 횟수: 10회 - 방법: 생활재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 공모
	생산지 방문	- 제목: 생산자 방문 및 체험 - 횟수: 8회 - 장소: 씨알살림축산, 미디안농산, 오산양조 등
	소모임	- 제목: 영어, 트랙킹, 공정무역 캠페인 등 - 횟수: 주제별 상이 - 장소: 조합원 공간 및 오프라인 선정장소
위원회활동	복지위원회	- 제목: 복지활동 - 횟수: 44회 - 실수요자를 위한 복지활동 전개
	생활재위원회	- 제목: 신규생활재 검토 - 횟수: 9회 (1,2월 9월 연합회에서 진행안함) - 장소: 사무국 및 조합원 공간
	편집위원회	- 제목: 공세알 웹자보 회의 - 횟수: 10회 (1, 2월 휴재예정) - 장소: 사무국 회의실
	교류준비위원회	- 제목: 일본 '가나가와 생협'과의 교류준비 - 횟수: 5회 이상 - 장소: 사무국 회의실
	공정무역활동 실행위원회	- 제목: 안양공정무역협의회 활동 관련 협의 및 집행 - 횟수: 12회 이상 (매월1회 이상) - 장소: 사무국 회의실
교육활동	직원 역량강화	- 매장 근무자 역량 강화 교육 - 전직원 대상 생협 연대의식 강화 교육
	연합 등 교육(외부)	- 임직원, 식생활, 공정무역, 기후위기관련 교육

2. 홍 보 부 문

1) 홍보활동

구분	대상	활동내역 및 계획	
온라인 활동	조합원	홈페이지, 밴드	- 조합원 활동소식 - 생산자 온라인 만남 - 다양한 캠페인 활동 홍보 - 매장 행사 및 이벤트 알림 - 총회 등 중요공지
		웹자보(공세알)	- 월별 중요 소식 - 조합원 참여 알림(월/달력) - 생활재, 생산지, 요리 소개 등
		인스타, 블로그	- 신규 생활재 소개 - 환경 캠페인 등 안내 - 복지반찬 소식
대면 활동	조합원	- 신규조합원 확대 - 책임조합원, 복지기금 안내 - 매장관련 이벤트 홍보 및 콘텐츠 지원 - 조합원 활동 관련 홍보 및 안내지 배포	

2) 연대활동

(1) 지역연대활동

- 안양시 공정무역 협의회
- 수원시 공정무역 협의회
- 화성시 공정무역 협의회
- 안양시 식생활 네트워크
- 수원시 식생활 네트워크
- 안양시 협동조합 협의회
- 한마당 축제 행사
- 안양시민 연대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먹거리생협네트워크 협의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전국 먹거리 연대
- 기타 활동

(2) 두레연합활동

- 두레연합회 총회
- 이사회
- 지역별 회의
- 실무책임자 회의
- 생활재 선정 회의
- 총무·회계담당자 회의
- 조직홍보 담당자 회의
- 개별나눔 실무 회의
- 그루터기 실무 회의
- 기타 활동

(3) 공정무역활동

- 공정무역 전문가 양성
- 공정무역 인식개선 교육
- 공정무역제품 제품 진열 홍보
- 공정무역 거리 캠페인
- 공정무역 시민단
- 공정무역 교육 (학교, 단체, 조합원 등)
- 기타 활동

(4) 기후위기캠페인

- 식생활 채식 강의
- 병뚜껑 수거 재활용
- 멸균팩, 우유팩 모으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제로웨이스트 운동
- 기후위기 관련 강의
- 기타 활동

(5) 국제교류

- 일본 생활클럽 가나가와 생협과의 정기 교류 (11월 일본 방문 - '후쿠시마 부흥지원회' 참여)

2024년 기획관리 부문 계획

1. 기관 운영

1) 이사회

- 홀수달 이사회 개최
- 의안 심의 및 조합원 활동 확대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다각화 모색

2) 감사

- 연 2회 사업과 활동, 회계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감독 및 지도

2. 조직 관리

■ 조합원 신규가입

	24년 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입 조합원수	1,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신규조합원 가입행사 진행예정(신규조합원 밴드가입 마스코바도 증정 이벤트-상시, 연중 2회이상 조합원확대 행사 실시)

■ 조합원 연대의식 강화

- 신규 조합원의 밴드 가입 등을 통해 생협에 대한 이해 확대 및 관심 유도
- 기존 조합원의 다양한 조합원활동 기회 제공으로 조합의 연대감 확대
-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안정적인 소통 채널 확보

3. 대외 연대 활동

■ 두레생협 연합회

- | | | |
|------------|--------------|--------------|
| -총회 | -이사회 | -실무책임자회의 |
| -생활재 선정위원회 | -두레연합 지역별회의 | -총무·회계팀 회의 |
| -그루터기사업팀회의 | -개별나눔 담당자 회의 | -조직·홍보담당자 회의 |
| -경영위원회 | -DLS운영위원회 | -두레생협연합회 이사회 |

- | | | | |
|---------------|--------------|--------------|-------------|
| ■ 안양지역협동조합협의회 | ■ 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 | ■ 안양지역급식네트워크 | ■ 안양지속가능협의회 |
| ■ 화성공정무역협의회 | ■ 수원공정무역협의회 | ■ 수원지역급식네트워크 | |

4. 인사·총무·회계

1) 경비절감

-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통해 생협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지속적인 지자체 보조금 지원정책의 적극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도모
- 정기 지출 비용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한 효율적 비용사용

2) 각종 지원사업과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영업외 수익창출을 도모(공모사업등)

3) 재고 조사

- 매장 재고 조사 및 현금시제 점검을 통한 정확한 손익반영

4) 인사기준 추가정비

- 취업규칙을 현 당사 실정에 맞게 수정

5) 교육

(1) 두레연합 교육

- 노무 교육(고용노동법 기준)
- 마케팅 교육(전략교육)
- 초급 실무자 교육
- 안전관리자 교육

(2) 법정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괴롭힘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안전보건 교육
- 퇴직연금교육

(3) 기타

-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 점장 리더십 교육
- 신규직원 업무교육
- 매장직원의 CS교육

2024년 예산계획(안)

1. 예산총칙

제1조: 본예산 회계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4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수입총액: 2,012,900,000원

-지출총액: 2,005,328,860원

-수지총액: 7,571,140원

제3조: 수입 및 지출명세는 다음 수지(안)과 같다

제4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목간이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예산의 항간이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양의 증가, 세율변경, 급격한 물가변동, 특별사업의 실시, 조직체계 및 기구의 변경 기타 대내 외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수 있다.

제8조 추가 경정 예산은 한정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2024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한도는 3억 원으로 한다.

2024년 총괄 수지예산(안)

계 정 명	2023년 결산(확정)	2024년 예산(안)	2023 대비율	비고
I. 매 출 액	7,772,993,664	7,650,000,000	-1.6%	명학폐점 반영
II. 매 출 원 가	5,781,430,295	5,699,250,000	-1.4%	매출대비 74.5%
III.매출총이익	1,991,563,369	1,950,750,000	-2.0%	매출대비 25.5%
IV.판매비와관리비	2,029,798,597	1,997,245,543	-1.6%	매출대비 26.1%
급여	872,549,386	908,160,840	4.1%	직원 인건비
상여금	-	19,400,000		직원 상여 및 성과금
잡급	-	-		
퇴직급여	99,275,076	89,113,978	-10.2%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활동비	15,931,950	20,630,000	29.5%	조합원활동 증대
복리후생비	87,321,807	90,565,880	3.7%	직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외
여비교통비	1,160,300	540,000	-53.5%	
접대비	707,000	1,000,000	41.4%	
통신비	48,703,042	41,947,763	-13.9%	매장홍보문자외
수도광열비	92,950,631	90,083,969	-3.1%	매장 전기료및관리비등
세금과공과금	3,820,390	2,941,500	-23.0%	

감가상각비	44,813,663	39,095,000	-12.8%	2021-2022년 시설투자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286,050,000	238,900,000	-16.5%	
수선비	6,371,355	11,220,000	76.1%	집기비품수리 및 노후시설수리
보험료	11,029,666	10,292,821	-6.7%	산재보험.차량및매장관련보험
차량유지비	6,196,966	6,938,000	12.0%	상무개인차량업무사용+회사차량주유비
운반비	77,809,756	71,952,720	-7.5%	매장배송기사 급여외
교육훈련비	1,323,828	1,932,000	45.9%	직원직무교육외(매장 cs교육)
도서인쇄비	215,300	200,000	-7.1%	
회의비	11,400,999	17,352,000	52.2%	이사회 회의비 인상,직원회의비
소모품비	15,276,567	13,691,032	-10.4%	
지급수수료	299,091,759	308,024,021	3.0%	물류대행 및 카드수수료
광고선전비	7,546,644	7,943,950	5.3%	연합홍보비외
판매촉진비	39,267,772	5,320,069	-86.5%	판매촉진활동(포인트지급외)비
대손상각비	984,740			
V. 영 업 이 익	-38,235,228	-46,495,543		
VI. 영업 외 수익	39,240,579	62,150,000		
이자수익	217,859	-		
지자체보조금	34,268,182	60,200,000		사경 지원금
판매장려금	-	-		
유형자산처분이익	1,852,545	-		
잡이익	2,729,465	1,770,000		
대손충당금환입		-		
배당금수익	172,528	180,000		
VII. 영업 외 비용	9,255,727	8,083,317		
이자비용	5,647,865	5,400,000		
기부금	1,782,222	583,317		
재고자산감모손실	443,126	1,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		
잡손실	1,382,514	1,100,00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8,682,721	7,571,140		
IX.법인세비용	1,303,710			
X. 당기순이익	-9,554,086	7,571,140		

2. 자본(조합원출자금)예산안

*2024년 조합원 출자금(자본금) 변동현황

내역	금액		비고
이월잔액	1,728,446,522		2022년12월31일 기준
탈퇴	-76,490,200		
가입	23,700,000		
책임출자금총액	32,310,000		
(직원)		17,860,000	
(조합원)		20,590,000	
이용	90,929,840		
단협이관	7,948,895		
잔액	1,806,845,057	1,806,845,057	2023년12월31일기준

*2024년 자본(조합원 출자금)예산안

항목	산출근거	예산안	산출근거
조성		121,600,000	
출자금	조합원신규가입	36,000,000	조합원신규가입 (월 100*12개월*30,000)
	조합원탈퇴	-48,000,000	조합원탈퇴 및 감자 (월 400만원*12개월)
	이용 출자금	100,000,000	출자금 의무증자
	책임출자금	12,000,000	직원책임출자금 (월 100만원*12개월)
		21,600,000	조합원책임출자금 (월 180만원*12개월)
운용		61,640,000	
시설투자	보증금 및 시설장치	20,000,000	명학점 원상복구비용
	냉장고 및 냉동기기	20,000,000	매장 냉장 냉동기기
	비품	10,000,000	냉난방기 및 컴퓨터주변기기
연합출자금		11,640,000	월 97만원*12

제4호 의안

2024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I. 차입금 최고한도액(안)

1. 제안사유

-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액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1-1. 관계조항

- 정관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0-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2024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액을 3억원으로 한다.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제9조)
제2장	조합원 (제10조 ~ 제16조)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 ~ 24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 ~ 제43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 ~ 제56조)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 ~ 제59조)
제7장	회 계 (제60조 ~ 제64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5조 ~ 제68조)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바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32번지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와 서울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가 포함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신설)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신설)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신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6개월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신설)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 출자의 금액 및 방법,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⑥ (신설) 수매, 홍보, 시설투자,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문화, 환경 사업, 성평등사회 조성 등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 사업 및 생협운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목적에 대한 특별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2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 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신설) 조합원이 공급, 매장 이용 시 발행되는 공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제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동을 위하여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신설) 공급수수료(또는 배송수수료)
2. (신설) 행사참가비
3. (신설) 가입비
4. (신설)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반 경비로 이사회에서 정한 것

② 조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20분의 1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또는 SNS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2조(합병, 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

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설)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이 제33조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 제33조제5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33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 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제33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설) 조합은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의 총회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로서 총회의 의사록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2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써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3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가 보완)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사업상의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추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10. (추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11. (추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2. (추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복지, 환경, 문화 사업
13. (추가) 성평등 문화 확산, 인식 개선, 여성인권 향상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14. (추가) 조합원의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식생활교육 및 외식사업
15. (추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사업 및 복지사업
16.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
17. (추가) 그 밖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

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신설) 협약에 의해 상호 이용을 약속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5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6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8조(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대의원선출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또는 구성원 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원단위 (또는 구성원 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임원선거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관위는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 ④ 1항의 후보자자격심사시 이사후보자의 자격은 가입기간 2년이상과 생협의 주요 운영 및 활동에 1년이상 참여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후보등록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 및 3항에 따른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 ⑤ 전형위원회는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 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 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3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4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6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18조 3항으로 이전

제27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0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잉여금배당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이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배당계산자료)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출자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월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좌수로 나누어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좌수에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승인이후 차기 총회부터 시행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할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변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승인후 차기 총회부터 시행한다.

바른두레생협 매장

안 양 점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마인빌 108, 109호 바른두레생협	031)468-2800
평 촌 점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인덕원점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명 학 점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 (안양동, 안양 센트럴 헤센)128호, 129호	031)466-8899
영 통 점 :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천 천 점 :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매 탄 점 :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동 탄 점 :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